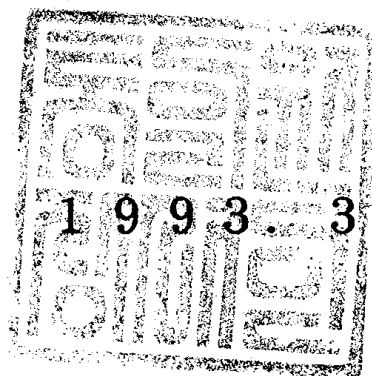


内部参考用

— 日本經濟交流代表團 訪北 結果 報告書 —
北韓의 對日經濟政策과 主要 産業部門 現況



1168

統 一 院
(交流協力局)

○ 본자료는 일본의 경제계 인사들로 구성된 '일본경제교류대표단' (단장 동아시아무역연구회장 飯島敏夫)이 지난해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후 발간한 방북 결과 보고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 경제정책 및 경제, 주요 산업부문 현황과 전망'이라는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임.

○ 동대표단은 일조무역회,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대기업, 은행 등 각계의 관계자 5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당시 위원장 직무대리 강정모)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음.

○ 이들의 방북기간중 주요활동은

— 부총리 김달현, 초청자인 강정모 등과의 환담 및 북한의 대일 경제정책 기조에 관한 설명 청취

— 북한의 투자유치 관련 법제와 시책, 사회간접자본 시설 현황과 발전계획 등 8개분야에 관해 해당 실무자(8명)로부터 설명 청취

— 국제통신센터, 남포항 등 9개 산업시설과 조선농업과학원, 청산리협동농장 등 7개 농업관계 기관 시찰

—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조무역회 등 4개단체 명의로 북한-일본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무역과 경험을 확대발전시키는 문제 등에 관한 공동선언문 발표 등임.

內部參考用

— 日本經濟交流代表團 訪北 結果 報告書 —

北韓의 對日經濟政策과 主要 産業部門 現況

1 9 9 3 . 3

統 一 院
(交流協力局)

I. 북한의 대일경제정책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북한의 서방 각국과의 대외경제, 무역교류에 관한 민간창구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이번 일조무역회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가 공동으로 파견한 일본경제교류대표단에게 동위원회의 강정모 위원장대리(무역부 부부장)는 대일경제정책과 투자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설명했다.

또, 북한의 경제·무역부문 최고책임자인 김달현 부총리도 대표단에게 “국교정상화 전이라도 경제교류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일본과의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1. 대일경제정책과 투자정책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강정모 위원장대리 환영사

일시 : 1992년 7월 15일 오전

장소 : 인민문화궁전

나는 飯島敏夫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아시아무역연구회와 일조무역회, 그리고 일본의 유명상사, 메이커, 은행을 비롯한 산업부문의 저명한 인사들을 주축으로 편성된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은 근래 양국 간의 역사에 있어서 경제인 왕래로서는 아마 처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3당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북·일 양국 인민들의 우호친선의 염원 아래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이 시작되었으며, 세계적규모에 있어서도 냉전구도가 붕괴되고 동서 간 힘의 대결이 경제교류로 바뀌어 평화와 화해, 협력의 시대가 열렸으며, 지역적인 협력이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각국이 서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일본과의 교류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은 북·일 양국 인민들에게 향후 이익이 되는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를 보다 강고히 하기 위해 모두가 일어서고, 일치단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서 진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국가활동의 최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서방측의 사람들과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은 할 수 없지만 식의주문제에 대하여는 어떤 걱정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들은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의 화해와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현재 그것의 이행을 위해 관련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북과 남의 노부모들의 고향방문도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조국통일을 최고의 숙원으로 삼고있는 북과 남의 인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우리들은 우리가 갖고있는 자원, 기술, 원료, 연료를 기초로 하여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5전쟁 때에 이 평양은 완전히 폐허화하여 벽돌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력갱생, 각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최근 5만세대의 현대적인 주택을 건설하여 김일성 탄생 80주년과

김정일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수도의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했습니다. 나아가 6·25전쟁 휴전 5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8월까지의 새로이 3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워 현재 그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상황은 여러분도 시찰을 통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은 결코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가능한한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것 또한 부족한 것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의해 조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종래 우리 나라의 무역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무역방식은 물물교환,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방식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양국 간에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그 협정에 기초하여 무역을 하고, 그때 가격의 설정은 과거 5년 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당시의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따라서 그들 국가와의 사이에서 실시되어온 경제교류도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 대외무역면에서도 일시적인 애로와 난관이 초래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난관과 애로를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각고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인 서방측 각국과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기초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것과 동시에 120만명 이상의 지식인을 비롯한 유능한 인재를 갖고 있으며 물질적 잠재력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이러한 인적, 물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면서 동시에 외국의 선진기술을 수용하여 앞에서 말한 일시적인 애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일경제정책과 투자에 관련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그 중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대일경제정책에 관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일관하여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인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평등호혜의 원칙에 의하여 대외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5대주의 10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경제·무역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가장 가까운 인접국입니다.

인접국가가 선린관계를 맺고 경제·무역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은 양국 인민의 이익에도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과의 친선을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일본과 경제·무역교류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인해 지난 기간동안 우리 나라와의 무역·경제교류에 여러번의 곡절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이르기까지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기초한 무역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에서 관세정책, 수입할당, 상호의 운송선박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양국 간의 무역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하여 양국 간의 무역량은 그다지 크지않은 약 4억 5,000만달러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준도 양국의 민간인사들의 노력에 의해 난관을 극복하면서 달성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북·일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인접국이기 때문에 선박에 의한 직접수

송 항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경유하여 무역하려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양국 간의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말에 우리와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간에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그 결과 현재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의 경제계에서도 경제·무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러분과 같은 대규모의 경제교류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정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무상통하게 무역·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간의 이익에 합치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인 세계의 모든 나라와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아래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시종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와의 경제·무역교류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최근의 일본경제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들과의 무역·경제교류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간주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서로를 위해 협력해 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우리 나라의 투자정책에 대하여

우리들은 자주·평등·호혜의 원칙아래 외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관계

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해 왔습니다. 쌍방의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투자 등을 통해 우리 나라와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가 경제·무역관계를 맺는 것은 쌍방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쌍방이 어떻게 손을 잡고 일을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 합영, 합작, 기타 100% 단독투자를 포함하여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우리는 1984년 9월 8일 합영법을 발표한 이래 각종 시행세칙을 만들어 합영 촉진활동을 하고 있고 합영·합작·단독투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나라 정무원에서는 두만강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정을 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일본을 비롯한 각국으로부터 이 결정에 관심을 나타내고 자료의 요구와 동시에 시찰단도 다수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투자에 관련된 법률과 시행세칙을 입안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들 법률을 직접 입안하고 있는 전문가가 현재 작업중인 법률에 관해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에게 완성된 법조문을 전낼 수 없지만 금후에 승인된 법률을 소정의 수속을 거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커다란 경제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공업을 비롯한 부문별 각 산업도 잘 정비되어 있고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체재중에 한정된 시간이지만 우리 나라의 각 분야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이해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작성했습니다.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이번 체재기간중에 아래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를 처음 방문한 분도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화국의 경제정책과 일련의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양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공장·기업소·문화기반에 대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현재 투자에 관한 법률 및 동세칙을 작성중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 해설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체재중에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접 견학하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듯이 이번 뿐만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왕래를 계속하여 상호 이해를 깊게 하면서 경제협력과 무역의 발전을 꾀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경제인입니다.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서 국제적 상관습의 현실에 합치하도록 또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생산적 거래를 해 갈 것을 희망합니다.

2. 일본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중요시

정무원 김달현 부총리 환영사

일시 : 1992년 7월 17일 오후

장소 : 인민문화궁전

飯島敏夫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동아시아무역연구회와 일조무역회의 공동 노력에 의해 일본의 우수한 상사, 기업, 은행 등 기업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대표단이 편성되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특히 환영합니다.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시작되어 현재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양국 인민이 국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이기도 한 때에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을 특히 환영합니다.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교정상화에 힘을 불어넣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단은 우리들이 환영을 하는 중에도 우리 나라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또 이제부터 이루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선물을 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와는 경제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는 각국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미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현재의 제반 조건에 맞도록 기존 합영법을 보다 완성·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합영법뿐만 아니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방책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

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는 나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영과 독립자본에 의한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가지 길을 열고 있습니다.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따른 중요한 몇가지 문제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나라의 에너지와 지하자원의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주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동해안에 있는 석유자원에 대해서 외국과 공동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비철금속, 철광석을 비롯한 잠재적인 자원의 개발에도 힘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공장의 근대화를 위해 외국의 투자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책제철소는 구소련과 공동으로 건설한 제철소이지만 건설 당시부터 구소련의 기술이 자본주의 국가의 기술보다 뒤떨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김책제철소의 제품은 사회주의 국가로 수출하는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자본주의국가에 수출하려면 품질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 나라의 공장을 근대화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수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인접국인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특별히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일본은 같은 아시아인의 나라이고 또 인접국입니다. 세계가 지금 지역적으로 블록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와 일본이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면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최대한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교정상화 전이라도 경제협력을 하여 자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국교정상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공표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일본의 경제계가 관심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지리적

으로 가장 가깝고 또한 투자능력이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전문가가 여러가지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으므로 나는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대표단이 우리 나라 체재 중에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전망, 장래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시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산업시설, 국가의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재기간 중에 여러분이 일본을 출발하실 때 가졌던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교를 정상화하기 전이라도 가능한 한 경제교류를 추진하려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우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국교는 반드시 수립된다는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북한, 일본 양국 인민의 바램이고, 또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며 아시아 각 국민의 이익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국교정상화는 반드시 수립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교는 반드시 수립될 것이니까 국교가 수립되기 전이라도 국교의 수립을 전제로 한 경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준비활동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진행하지 않고, 국교가 정상화되고 투자를 시작하려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Ⅱ. 북한의 경제 및 주요 산업부문의 현황과 전망

일조무역회는 금년 3월 무역회 대표단 (단장 : 谷洋一회장)의 북한방문 때에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투자환경조사항목」을 제출했다.

동위원회는 이번 일본경제교류대표단 일행에게 경제·무역관계 제도 및 주요 산업부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동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를 통해 소개했다.

이 소개는 우선은 「투자환경조사항목」에 대한 회답이라는 의미가 있고, 일·북 간 경제·무역교류의 촉진에 유익함과 동시에 북한측의 대일경제 협력관계의 발전에 대한 의욕을 나타낸 것이다.

1. 북한경제의 발전과 에너지 정책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정용정

우리는 해방 후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계획화에 노력하여 근간의 수차에 걸친 사회주의 건설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확립을 기하고 중공업을 기본위치에 놓고 경공업, 농업도 함께 발전시켜 종합적·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망계획기간 동안에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한층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생활의 물질적 과제를 중시함과 동시에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더 높이기 위해 공·농업 전반에 걸쳐 인민경제의 한층 높은 발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우리는 공장·기업소의 수준을 근대화하고, 그 공장·기업소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능력을 갖춘 새로운 건설

도 같이 시작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기간공업부문의 발전전망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에 일차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로서는 기간공업을 완비하여 선진적 기술을 정비하고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계속하여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 에너지공업의 발전전망

기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문은 연료, 동력공업-에너지공업입니다. 우리는 이 연료·동력공업을 다른 인민경제부문에 우선하여 발전시켜 그것을 통해서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이후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우리들이 에너지공업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력발전소의 건설입니다. 현재 우리의 계획은 금후 수력발전소를 보다 정비하고, 화력발전소를 더욱 더 건설하는 것과 동시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산지가 많아 수력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풍부한 수력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과가 높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에너지공업, 전력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수력자원은 매우 풍부하여 최근에도 수많은 수력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는 하천의 수력자원이 풍부하여 북한에만도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장자강, 청천강, 북한강, 임진강을 비롯한 큰

하천과 중·소규모의 하천을 포함하면 4,0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수자원 및 수력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남강발전소, 영변발전소, 희천발전소, 태천5호발전소와 같은 유력한 몇개의 수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대상은 조업이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수력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단천발전소, 위원강발전소, 금야강발전소, 의주발전소 등 각지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중요하천에 대규모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그 방식으로는 급류식-계단식 발전소의 건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형은 하천이 상당히 발달한 지대이기 때문에 대동강, 순천강, 청천강 등에서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갑문식 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대동강에 미림갑문발전소, 봉화갑문발전소를 비롯한 몇개의 갑문식 발전소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 청천강을 이용한 향산발전소의 건설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이들 하천의 상류에 발전소를 건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수력자원을 증강하기 위해 조력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조력자원도 풍부합니다. 특히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커서 발전능력을 얻는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청천강하구, 증산군, 해주지방 등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많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우선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우선하고 이어서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여 각종 수력자원분야의 각 부문을 통합하는 수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해 국가 에너지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현재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제 1 단계 건설을 완료하고 제2단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설을 계속함과 동시에 사리원과 남포지구에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 우리는 중요공업지대, 주요도시지대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력문제,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예정하고 있는 이러한 발전소 건설을 서둘러서 그 건설이 완료되면 인민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수요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분야에서 연료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중심적인 연료는 현재 석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석탄의 자연분포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안주, 덕천, 순천 등 평안남도 지역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다음으로 북부지구-함경북부지구에도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최근에 황해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대량의 초무연탄을 탐사·발견했습니다. 초무연탄은 청원과 평안도의 일부지방에도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그 개발조건도 양호합니다. 따라서 노천광 개발이 가능하고 박토작업을 위한 노동력투입의 필요성도 적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석탄공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무연탄과 고칼로리탄의 가공방법 등 이들 석탄에 적합한 기술조건을 갖추어 공업원료에 이용할 수 있는 이 분야가 금후 크게 유망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 외에도 우리는 현재 육지부분과 동·서해부분에서 원유와 가스

의 탐사작업에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 금속공업 및 광업

다음은 금속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철강을 국내에서 소비하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철강생산을 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입니다. 현재 서부지구에 새로운 철강생산기지를 건설중이지만 금후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성진제철소를 비롯한 현재의 금속공장을 개선, 근대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철강생산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향후 스텐레스강, 규소강판(변압기용 강판)과 각종 합금생산 그리고 특히 금속2차가공부문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에 의한 야금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금속공업에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계속하여 강력히 추진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철강생산의 확대를 맞추어 그 원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매장량을 갖고 있는 무산연합기업소의 철광석 채굴량의 증산을 도모하여 무산광산의 철광석 생산능력을 1,500만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지구에서 이미 개발에 착수하고 있지만 그것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급속히 증대하는 철강생산 수요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북부지역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 아연, 동 등의 비철광물자원이 풍부합니다. 매장지역은 검덕지구, 단천지구, 양강도지구 등입니다.

기타 서부지구-평안남도에서 비철광물자원에 대한 대량의 탐사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서부지구의 은파를 비롯하여 유망한

비철광물자원 매장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연, 아연, 동 등의 비철금속 외에 니오바움(Nb), 탄탈, 지르코늄(Zr), 칼륨 등의 희소금속과 레아아스류가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는 이들 광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위해 우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광산의 능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탐사작업을 계속 강화하여 비철금속 생산의 확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광산물 생산을 늘리고 비철금속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남포제련소, 단천제련소와 문평제련소 등의 공장을 근대화하여 그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새로운 제련소를 건설하여 모든 유가금속을 효과적으로 회수·이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도입 추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비철금속 가공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각별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연, 아연, 동 등의 비철금속에 대한 2차가공, 3차가공기지를 정비하여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해외수출도 대량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경금속 생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황해남도, 평안남도 등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칼륨장석과 경질운모를 이용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원료 공급없이 국내원료만을 기초로 알미늄합금 생산을 대폭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사리원칼륨연합기업소의 건설에 착수하여 이미 제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기계 및 전자공업의 발전전망

다음은 기계 및 전자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계공업에 있어서 공작기계 생산을 대폭 늘리고 그 제조품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치제어 공작기계, 가공선반, 대형 공작기계, 특수 공작기계를 대량으로 생산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미 용성과 희천지구에 새로운 공작기계 생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향후 생산기지의 능력을 확장하여 기술발전의 요구에 따르도록 지속적인 근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성, 희천, 청진 등 각지에서 공작기계공장이 조업하고 있고 우리는 이들 공장의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작기계뿐만 아니라 중기계, 자동차, 트랙터, 채굴기계, 건설기계의 생산도 크게 신장시킬 예정입니다.

우리는 또 향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현재 갖고있는 트랙터공장을 근대화하여 대형자동차, 트랙터를 개발하고 자동차 엔진(디젤엔진), 유압기계, 전기기계의 생산기지를 근대화하여 그 능력을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건설기계의 생산을 늘리고, 새로운 건설기계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에 대해서 말하면 기계공업분야 자체가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산소분리기의 생산기초를 세우고 품질을 높이는 것과 같이 기계공업부문 각 분야를 발전시켜 국내의 기계설비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킴과 동시에 대외수출에 있어서도 기계제품의 비중을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공업, 자동차공업 분야의 發展展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國家展望計劃 가운데서도 이 분야의 발전을 중심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IC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의 생산을 대폭 늘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오토매틱장치, 컴퓨터, 그리고 TV수상기, 냉장고, 녹음기 등의 전자·가전제품의 생산을 증가시켜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수요를 충족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는 열전(熱電)재료, 자성재료를 비롯한 금속 및 비금속 소재와 고순도의 시약 생산기술을 확충하여 생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라) 선박공업의 발전전망

우리는 청진, 남포, 원산 등 동·서해안 각지에 선박공업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에서는 선박공업이 커다란 발전전망이 있는 공업 부문임이 확실합니다. 해안선이 길다는 자연조건의 유리함을 살려서 이 분야를 한층 근대화하고, 향후 엔진과 기타 필요한 선박 의장품 생산의 근대화까지 추진하면 현재의 생산능력을 한층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선박공업에 대한 국내 및 수출수요를 보장하는 한편 선박수리기지를 더욱 잘 정비하여 어업 및 해운서비스 등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 시멘트공업의 발전전망

시멘트공업의 기본원료는 석회석이고 우리 나라에는 석회석이 무진장으로 매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시멘트공업은 일정한 토대가 세워져 있고 또 경험도 있는 공업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거의 모든 곳에 석회석이 분포해 있고 이미 순천, 승호리, 사리원지구, 해주지구, 자강도, 황해북도 등 국토의 동서부에 대규모의 시멘트공장이 오래 전부터 가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연산 200만톤 규모의 상원시멘트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멘트공업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고 석회석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유익한 자원입니다. 이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시멘트생산을 증대시켜 국내수요, 대외수출에도 대량으로 공급해 갈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공장의 정비·확충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사리원지구에 칼륨장석을 원료로 하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리원칼륨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공장의 건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이 에너지분야를 포함한 기간공업분야의 현황 및 발전전망입니다.

(2) 식의주문제 해결의 전망

인민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한 전망에 관하여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식의주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확실한 토대를 세워왔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제부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풍부하게 할 중요한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 농촌경영의 발전목표

농촌경영분야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농촌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을 공업화한다는 과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농업의 공업화를 완전히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의 공업화를 위해 농촌경영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과학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농촌경영의 수리화, 전기화를 실현했지만 현재 이것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서해갑문을 건설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단기간에 서해에 200리의 수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벼의 생산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전기화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나라의 농촌에는 거의 모두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농촌경영부문에 있어 각종 작업도 모두 전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촌경영부문의 탈곡과 기타 작업도 모두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농촌경영분야에서 가공작업을 다양화하고 또한 이들을 전기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는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농업기계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농촌경영의 중

(2) 식의주문제 해결의 전망

인민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한 전망에 관하여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식의주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확실한 토대를 세워왔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제부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풍부하게 할 중요한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 농촌경영의 발전목표

농촌경영분야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농촌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을 공업화한다는 과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농업의 공업화를 완전히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의 공업화를 위해 농촌경영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과학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농촌경영의 수리화, 전기화를 실현했지만 현재 이것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서해갑문을 건설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단기간에 서해에 200리의 수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벼의 생산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농업에서 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전기화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 나라의 농촌에는 거의 모두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농촌경영부문에 있어 각종 작업도 모두 전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촌경영부문의 탈곡과 기타 작업도 모두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농촌경영분야에서 가공작업을 다양화하고 또한 이들을 전기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는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농업기계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농촌경영의 중

합적 기계화를 실현한다는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랙터 이 외에도 농촌에 현대적인 농업기계를 많이 생산·공급한다는 과제가 우리들 앞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화학비료의 생산을 늘려서 단위당 시비량을 2.5톤 이상으로 함과 동시에 기타 각종 화학재료의 공급량을 늘리고 그 품질도 개선하여 농촌경영의 근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는 해면간척(海面干拓)과 토지개간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경지면적을 보다 많이 증가시킬 것을 농촌경영부문에 제기된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 수산업의 발전전망

인민생활의 식의주 문제를 고려할 때 수산업은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의 발전전망은 매우 큽니다. 생선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우리는 연해어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어로에 있어서 외국과의 합영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養殖產品의 생산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유리한 해안조건을 이용하여 양식면적을 늘리고 다시 마, 미역, 해태, 조개류, 전복, 해삼, 새우 등의 양식 생산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다) 경공업, 방직공업 등의 발전전망

우리는 이제부터 경공업혁명을 일으켜서 인민소비물자 생산에 일대전환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경공업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국내수요에 기초한 수준의 생산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공업부문을 전반적으로 근대화하고 그 생산량을 늘림과 동시에 가공무역, 합영, 합작을 특히 이 부문에서 넓혀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경공업제품의 경쟁력을 높혀 대외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방직공업의 발전에 힘을 쏟아서 직물의 연간생산량 15억m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평양종합방직공장과 신의주, 부성, 사리원, 강계, 함흥, 개성 등에 대규모의 방직공장과 도처에 있는 중·소규모의 직물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공장을 근대화하여 직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림과 동시에 새로운 생산능력의 확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직물생산에서 메리야스제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직공업과 함께 우리는 천연섬유생산이 자연조건의 제약을 받는다는 조건 때문에 비날론 등 각종 화학섬유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직공업과 함께 제화공업, 식품가공공업, 주방용구, 가구 등 가정용품과 학용품, 문화용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일용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특히 전기·일용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서 나날이 증대하는 인민의 수요를 풍부하게 보증할 예정입니다.

인민소비물자 생산에서 우리는 대규모 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조선노동당의 일관된 방침을 계속하여 관철할 것입니다.

(라) 화학공업의 발전전망

다음은 화학공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물과 직물의 생산계획목표를 완수하여 인민의 식의주에 대한 요구를 원할히 해결하는 것이 화학공업에 부여되어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망기간에 화학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는 화학비료, 화학섬유, 합성수지, 가소재, 탄산소다, 가성소다, 유산 등의 기초화학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각종 유기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의 생산을 늘려서

다양한 국내수요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화학공장을 새로운 기술로 개선·확장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공업기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 주택건설의 발전전망

우리는 주택건설도 매년 20만세대씩 건설하여 국민들에게 현대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평양시에 건국거리, 통일거리를 조성하고 5만세대의 현대적인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3) 기타분야의 과제

이 외에도 우리는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건설하는 문제, 기타 철도건설 등 여러가지 분야를 개발하고, 상업 및 서비스시설을 개발하는 문제, 관광업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 사회·경제생활의 각 부문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展望的인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기본적인 과제와 원칙

이처럼 우리는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아올렸지만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를 더욱 강고하게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현재 토대도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잠재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훌륭히 정비하여 수출자원과 가공공업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경제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는 이미 토대를 쌓고 있으므로 현재는 이것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일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과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합영과 합작을 추진하며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15일(수) 오후 인민문화궁전

(참고) 강사인 정용정씨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투자환경과 법규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정철원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과 경제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나라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통상 외국의 자본투자는 합영, 합작, 독자기업의 외자도입에 관한 법규의 완비를 위해서는 투자관계의 법 정비와 함께 합영, 합작, 독자기업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화국합영법이 제정되었고 그것에 근거하여 각 분야에 합영기업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작, 독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규는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가건설사업은 세계 각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종래보다 한층 더 확대되고 있고 특히 최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함께 직접투자에 관한 법규의 완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환경의 정비에 관한 관련법규를 작성중입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고하여 우리 나라의 자본투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화국헌법 제36조 및 제38조(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헌법개정 결의)에는 완전한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외국의 법인, 개인과 합작,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외정책의 이러한 입법적 원칙에 기초하여 대외무역분야에 관한 여러가지 법규가 전개되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행 합영관련 법규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합영관련 법규로서는 합영법, 동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이 있습니다. 합영법에서는 합영기업에 참가하는 외국측 당사자에 대해서 공화국 법의 보호아래 경영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투자한 재산과 기업운영활동에서 얻어진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합영법은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상의 편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합영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며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권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합영기업은 기업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3년 간은 소득세의 납부를 면제받고 또한 회사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의 합영당사자는 배분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받고 있으며 합영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회사에서 받은 임금의 일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조직과 경영활동, 회사의 운영에도 발생하는 분쟁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경제교류, 경제협력을 밀접하게 하기 위한 법규의 제정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공화국합영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합영기업을 북한측의 투자가와 외국측의 투자가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투자액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영기업에 대한 자재의 공급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합영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는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합영기업이 국가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합영공업총국의 자재상사와 합영기업이 계약하여 공급됩니다. 다음은 합영기간의 문제로 합영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영기간은 합영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출과 국내판매의 문제입니다. 합영법 제15조와 동시행세칙 제33조에 따르면 합영기업은 그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고 또 수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법률상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합영기업의 설립수속과 인가기관의 문제입니다.

합영기업의 설립인가는 대외경제기관이 합니다. 외국측 당사자가 북한측 당사자와 합영계약을 체결하면 북한측의 당사자가 합영공업총국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에 관한 수속 일체는 북한측의 당사자가 담당합니다. 합영이 승인되면 북한측의 합영당사자는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이 되었을 때부터 법인이 됩니다. 북한측의 당사자가 없는 기업-외국인독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외국인기업이 대외경제기관 또는 정부원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기업의 설립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이 승인 또는 부인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인가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설립신청서,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서, 회사의 승인 내용(출자액, 명칭, 주소, 합영기간을 기재한다.) 등 입니다.

합영계약서의 내용은 회사의 조직목적과 명칭, 주소, 합영기간, 활동범위, 등록자금 등과 그 외에 출자비율과 출자방식, 이사회 구성원과 이사회규약, 정관, 계약자 쌍방의 권리의무, 생산제품의 판매, 생산제품의 품질보증, 원료, 자재의 구입, 관리멤버, 회사조직활동의 보증, 외화관리, 결산과 분배, 회사의 해산, 분쟁해결, 계약의 효력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 정관의 내용에도 회사의 명칭, 회사의 법적형태, 주소, 출자금, 출자액, 회사의 관리기구, 회사의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회사의 활동내용, 재무, 노동력, 감가상각, 적

립금, 이익금의 기재를 요약합니다. 합영기업에 있어서 출자자의 책임범위는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 합영기업의 설립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영기업은 5인정도의 멤버로 이사회를 조직하고 사장, 부사장을 출자자 쌍방이 분담·파견하는 경영관리기구가 설치됩니다.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부 기입언어는 조선어를 기본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타국어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화폐의 단위는 조선 “원”이고 외국의 화폐단위로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회사가 소재하는 해당 노동조정기관을 통해서 보증되고 본인의 요구가 있든가 또는 일을 게을리하는 등의 위약행위가 있으면 그 자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합영기업은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생산계획을 작성, 합영공업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영기업의 생산계획 수행과 국가계획과의 관련은 없습니다. 단, 국내시장에서 물자를 판매하든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합영공업총국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국내판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수출과 국내판매의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재료, 연료, 부품은 합영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경우는 합영공업총국에 제기하여 합영자재상사와 계약을 맺어 보증을 받게 됩니다. 생산에 필요한 외국산 물자는 합영기업이 직접 수입할 수 있고 국내제품도 국가계획에 어긋나지 않으면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분쟁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의 접수처리는 행정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이 합니다.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문제는 불편의 신청, 청원의 형태로 당해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소득세 납부에 관한 의견은 소득세를 징수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합니다. 그 경우 그 상급기관은 불편의 접수처리기관이 됩니다. 또 재판기관이 불편접수기관이 되는 경우는 불편 제기자의 소송수속에 의해 재판기관은 재판

의 법규에 의해 심의·해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소유권의 침해문제라든가 그 외에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재판기관에 제소하여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재기관에 의한 불편의 접수는 불편을 호소하는 자의 중재신청에 의해 중재기관이 우선 당사자의 협의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를테면 대외경제계약 이행에 관한 분쟁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영법 제26조, 동시행세칙 제68조~제7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투자를 위한 관련법규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주요법규로서는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노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보전법, 무역법, 해사법, 관세법, 상표, 발명, 로열티, 의장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주의노동법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공화국의 노동정책은 이 법에 의해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노동력은 생산요소 가운데서도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맞추어 공장, 기업소의 노동수요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등, 기초의 의무교육제에 따라 기초교육을 받은 고등중학의 졸업생을 기능훈련학교, 양성소의 체계를 통하여 숙련공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기술자, 중등기술자가 공장, 기업소의 생산관리자, 기술자로서 파견되고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의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질적인 구성을 좋게 하고 노동수요의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질적보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 정시제교육제도를 통하여 기술활동가, 경영관리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에 숙련공훈련학교를 설치하여 자신의 공장에 필요한 숙련

공을 육성하여 종업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는 노동력의 수
용과 그 전직(轉職)에 대해서 올바른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에서
는 필요한 노동력을 노동행정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장, 기업
소 간의 노동력을 조정할 때에도 해당 기관과 해당 행정기관이 합의한 가운데
해당 행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조직, 집행하게 됩니다. 공장, 기업소가 종업원을
받아들였을 때 필요한 수속은 우선 종업원을 등록하고 노동안전교육을 한 후
본인의 능력에 따라 현장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연령이
만 16세부터이고 노동연령에 달하지 않은 소년의 노동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노동시간은 8시간이고 일의 난이도 혹은 기타 조건에 따라
7시간, 6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휴식의 권리
는 유급휴가제에 의해 보증받고 있습니다. 하루의 노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하
고 국가의 축일과 일요일에도 쉬지만 그 외에도 정기휴가와 보충휴가, 산전·
산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장, 기업
소는 작업조건을 보증하여 종업원의 노동생활 조건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힘의
회복을 보증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노동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질과 양이 동일한 노동에 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
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자의 기본생활비 이 외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중
급제, 보너스제도에 의해 추가적인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일을 잘한 노동자에게
는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여 노동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동보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업원이 여러가지 사
회적, 국가적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경축일에 있는 국가적인 은혜 외에도 사
회보험제도에 따라 노동재해, 질병, 부상에 의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 연금 등을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에게 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기 및 보충휴가, 또 산전·산후휴가(150일)의 기간에 대해서도

생활비와 일시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지만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공화국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간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의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라고 해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조직 간의 재산관계는 민법의 규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화국민법 제11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고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기업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라는 것은 외국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인격이 없는 법인을 가리킵니다.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 설립된 법인은 북한의 법인으로서 기업활동을 자유로이 하여 법적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4조 제1항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영, 합작, 독자기업에 있어서도 그 법적책임은 그 기업의 지배인이 관리책임자로서 갖고 민사행위상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민법에는 소유권제도와 채권채무제도,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규정은 외국투자자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외자도입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역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는 대외무역정책의 기본원칙 즉 무역활동에 신용을 지키고 사회주의 제국과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세계 각국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을 하고 무역협정의 체결, 무역화물수송과 무역외화의 관리와 이용, 세관검사와 관세 등 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원

칙과 질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입허가제도, 수입품 사고처리, 수출입품 공급, 수입품 검사, 브랜드설비의 수출입,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무역품의 검사, 대외운수사업, 관광 등과 기타 34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입 허가는 무역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영기업은 생산한 제품의 수출 또는 생산에 이용하는 물자의 수출입을 직접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합영기업이 생산에 이용하는 물자의 수입 혹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법에는 국가의 세관정책에 기초하여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는 무역부가 작성한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세관이 징수합니다. 세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가능한 것과 수입하지 않아도 좋은 물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높게 징수합니다. 합영기업이 대외시장에서 물자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외자도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관계법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제1부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해설 제1부에서는 투자에 관련된 두가지 종류의 법률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투자에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과 투자에 관련있는 법률에 관해서였습니다.

다음은 자본투자에 관해서 현재 작성하고 있는 법규의 주요내용,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환경의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함께 법률환경이 완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투자의 일반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투자법규

(나)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가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 생산과 경영활동

을 하고 받아들인 투자를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반제하든가 이윤을 분배하든가 하는데 관한 문제를 규정하는 합작에 관한 법규

- (다) 외국인 단독투자-독자투자를 규정한 법규
- (라) 투자가의 입국수속에 관한 법률(투자대상의 심의, 허가를 포함)
- (마) 토지이용 등에 관한 법규
- (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자유무역항(나진·선봉·청진항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규
- (사) 은행, 금융, 외화의 회계, 세무에 관한 법규
- (아) 노동관리에 관한 법규
- (자)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법규
- (차)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거주, 체재 등에 관한 법규

이들 법규를 비롯한 각종 법규, 규정이 작성중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개요 및 규제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투자와 투자가의 자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를 받아들이는 목적은 세계 각국과 경제관계를 현실의 발전요구에 맞추어 확대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기관, 회사, 기업체, 개인, 국제기구 연합체, 해외조선동포를 비롯하여 공화국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자는 누구라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투자형식과 투자분야, 투자장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합작, 합영, 독자의 형식으로 행하고 유한책임으로 합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합니다.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을 비롯한 산업부문과 과학기술관계, 관광, 유통, 금융부문 등의 각 분야에 화폐, 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노하우를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는 최첨단기술을 이전하여 국제시장에서도 높은 경제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문에의 투자, 외화수입을 늘려 나라의 외화수지균형 유지에 특별히 기여가 가능한 투자, 또는 자연개발과 사회간접자본건설에 대한 투자,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투자 등입니다. 이러한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세금의 면제 및 감면, 노동력, 원료, 자재 등에 대한 유리한 구입조건의 우선적 보증,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 등과 같은 특별한 대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족경제의 발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공화국의 환경을 파괴할 것 같은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투자기업의 투자대상 심의, 설립 심의, 경영활동상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이 공화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권한관할에 기초하여 대외경제사업부 또는 합영공업총국에 투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신청을 받은 기관은 투자의 형태와 대상에 따라서 50일 내지 80일 사이에 투자신청에 대한 허·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기업의 설립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소재지의 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 등록을 해야 하며 기업이 등록되면 그때부터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합작, 합영, 독자기업이 조직되면 정관과 규약에 기재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째로 투자기업의 노동력 채용과 해고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투자가의 요구대로 보증될 것입니다. 기업은 생산·경영상의 요구와 그 조건에 필요한 인원수를 스스로 결정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업원을 심사, 채용 나아가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경영상의 조건과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기업에 유리하

도록 종업원을 해고하고 공화국 노동행정기관에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양적수요뿐만 아니라 질적수요도 보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근면함과 규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식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노동행정기관은 노동력의 보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보증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기능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70 내지 1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각국의 투자상황을 보아 금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투자기업 장려를 위한 보증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활동에서 독자성을 갖으며,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종래의 법률이 효력을 갖지 않게 되어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초래된 경우 적어도 5년 간은 투자자의 권리가 종래와 같도록 보증하기로 하여 투자자가 불리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기업활동을 함에 따라서 얻은 합리적인 이윤과 정당한 수입, 기업이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제한없이 국외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재산은 국가가 국유화한다든가, 국가가 접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따라 그 재산을 국유화 또는 접수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토지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를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할 수 없지만 빌릴 수는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는 공업용지, 경작지, 건축용지를 비교적 장기간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차용기간 내에서는 빌린 토지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상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업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공업소유권제도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공업소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발명, 발견, 창의고안, 공업도안, 상표, 생산지명칭은 사회주의헌법 제74조,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1986년 6월 8일 채택), 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법령(1988년 9월 5일 채택) 등의 법률에 따라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발명권 소유자는 발명의 우선권과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발명권소유자는 발명의 경제·기술상의 효율성에 따라 국가에서 상당한 보장과 국가적·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특허권 소유자의 승인없이 누구도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이란 발명기술에 따른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수출 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계약에 따라서 그 권리의 일부를 정해진 기간동안, 또는 완전히 다른 기관, 기업소,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1980년부터 공업소유권에관한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 상표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의 가맹국입니다. 공화국의 공업소유권 법규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개인뿐만 아니라 상기한 국제조약과 협정에 규정된 상호의 원칙에 의해 외국의 법인과 해외동포와 그 기업체,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기업체, 개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세계 100여개국과 이 분야에서 실무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소유권 대상에 대한 신청의 접수, 심의, 등록, 보호와 같은 모든 활동은 발명총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출입국, 파견원사무소, 가족거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출입국관계는 중앙비자제입니다. 따라서 출입국 수속에 시간이 걸립니다. 북한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에도 사정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일 양국민의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 출입국관계에 제기된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국

국민 간의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양국 국민의 이익과 요구대로 빠른 시일 안에 성공을 거두면 일본인의 우리 나라 입국수속에서 제기된 문제는 없게 되고 수속의 간소화는 물론 필요한 시기에 입국이 희망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어서의 출입국문제는 상술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오든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직접 일본 혹은 제3국으로 갈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파견원사무소의 인가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행정경제위원회가 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이 작성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파견원과 그 가족의 거주 및 수속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나라의 영역 내에서의 일반 외국인의 체재, 상주체제, 거주 및 여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진·선봉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국의 기관, 기업소, 개인이 투자활동을 위해 상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간편하고 우대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투자가의 생활상의 편의제공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의주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식의주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전면적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일성 생일 8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평양시내에만 해도 5만세대의 주택을 국가가 건설하여 노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투자경영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고 그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보증하기 위한 법규범이 작성되게 될 것입니다. 투자가는 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족생활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는 아파트와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요구하면 임차한 토지에 건축한 자기의 주택을 개인소유로서 이

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가는 시내에서 또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노면전차, 무궤도전차, 택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정기권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열번째로 교육, 보건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국가의 시책에 의해 1년 간의 학교 전 의무교육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무료로 공부하고 대학과 전문학교의 학생에게는 국가로부터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반적인 무료치료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녀가 우리 나라의 학교에서 공부할 경우 조선인민의 자녀와 같이 무료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에 따라 분교 또는 다른 학급을 조직하여 개별적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할 때에는 그것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담당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질병에 걸리면 언제나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병원,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의료서비스와 약대는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가가 휴가를 이용하여 풍광이 아름다운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승, 관광지, 고적에서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1992년 7월 15일(수) 오후 인민문화궁전

(참고)강사인 정철원씨는 법제부문에 소속된 법률전문가이다.

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김보명

우선 나진·청진 및 선봉지구에 있어서의 산업배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잠재성이 있는 항만을 가진 나진에는 화학공장 이외에 1~2만 톤까지의 선박 수리가 가능한 선박수리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수리능력은 연간 40척 내지 50척입니다. 이 외에도 식료품, 일용품, 건재, 피복공장 등 50여개의 지방산업 공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청진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 청진버스공장 등의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선봉지구에는 20만 Kwh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서두수에는 42만Kwh규모의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두만강의 수자원은 42억 m^3 입니다. 그 외에도 이 지역에는 2억 m^3 의 수자원을 가진 중·소하천이 있고 이것을 합계하면 44억 m^3 의 수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진, 선봉, 청진지구에 용수를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선봉지구의 총인구는 현재 13만명입니다. 그 가운데 도시인구가 9만명이고 농촌인구는 4만명입니다. 이 지역의 1Km²당 인구밀도는 200여명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력 수요도 원활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된 이 나진, 선봉지구에는 일정한 사회간접자본 설비가 되어있어 산업시설과 주민생활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와함께 유리한 자연·지리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와 힘을 쏟아 붓는다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세우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평양 국제회의에서 소개했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지역에 있는 현재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그 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항만능력(나진, 청진 양항을 합하여 1,100만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중계화물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제1단계로 나진, 청진 양항을 각각 1,000만톤의 능력으로 증강시켜 합계 2,000만톤의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항만능력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 2 단계에는 청진항의 능력을 1,000만톤, 나진항의 능력을 2,000만톤으로 확장하여 합계 5,000만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후의 전망기간에는 나진항과 선봉항에 있는 원유전용부두도 최대한으로 증강하면서 이 자유경제 무역지대 내에서 1억톤의 화물을 중계수송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지구의 철도망은 우선은 현재의 능력을 이용하면서 점차 화물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제 1 단계로는 전기화되어 있지않은 회령과 학송 간의 160Km를 전기화하고, 두만강역에서 구룡평 간의 10Km에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며, 전기화 구간의 역을 개량, 확장하는 한편 중량화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제1단계에서 이와같은 능력증강이 이루어지면 증가하는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단계로는 나진과 훈유 간의 구간(여기에는 중국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110Km를 복선화하고 나진과 구룡평 간의 30Km구간을 복선화한 후에 일부 역과 운영시설을 신설 또는 개선·개량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후의 전망계획은 후창~나진 간 13Km에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고 전반적인 구간에 있어서 철도의 자동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1억톤의 화물 중에 철도수송으로 5,000만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곳 북부지구의 도로에 관해서는 우선은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면서 제1단계로는 나진~셋별 구간(여기도 중국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110Km와 청진~회룡 구간 70Km를 9m 내지 10m로 확장하여 늘어나는 화물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제2단계로는 셋별~남양, 홍의~두만강(여기에는 러시아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은덕~온성, 여기에는 중국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등 70Km 구간을 위와 같이 9m 내지 10m폭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계획으로는 나진~셋별 구간을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면서 장래에는 이 구간의 도로와 두만강지역에서 러시아와 연결되는 도로를 고속도로로 건설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구체화되면 당면하여 늘어나는 화물을 수송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1억톤의 화물가운데 50%를 맡아 처리하여 중계무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만강하구의 삼각지대 중에서 나진·선봉지구는 중국과 연결, 훈춘 그리고 러시아의 핫산과 블라디보스톡과의 사이에 항로와 철도, 도로로 삼각환상망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개발과 이 지역 각국의 경제무역교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통신 및 방송을 보장하기 위해 제1단계로는 나진시의 중심에 1만m²규모의 통신센타를 건설하여 여기에 디지털 시내교환기와 텔렉스 자동교환기, 국제 자동교환기, 디지털 라디오 설비와 통신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 지역의 국제통신을 보증하기 위해 현재의 평양~나진~블라디보스톡 간의 마이크로파 통신망의 용량을 대량으로 늘이고 나진~훈춘 간에는 근거리 디지털 마이크로파 중계망을 새로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2단계로는 이 지역 내의 주민과 산업의 배치에 따라서 통신분국을 건설함과 동시에 여기에 디지털 및 텔렉스·팩스교환기 등 각종 통신교환시설을 설치하고 이 지대에 인텔세트 및 인말세트의 태평양지구국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 또 일본 국내통신위성과의 방송지구국의 형성도 동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있어서 증가하는 여객수송을 원활히 보충하기 위해 선봉군 굴포리에 새로이 국제공항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나진지구, 선봉지구, 웅상지구, 우암지구, 홍의지구, 두만강지구로 분구하여 나진지구와 선봉지구, 웅상지구는 산업 및 주민지구, 우암지구는 관광 및 유원지구, 홍의지구는 서비스지구로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진지구에는 피복, 편물, 식품, 일용품, 제화공업을 비롯한 경공업공장군과 기계 및 전자, 자동화공장군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선봉지구에는 원유 정제 및 전자, 자동화공업, 그리고 피복, 편물, 일용품 등의 경공업기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 웅상지구는 건재공장, 목재가공, 포장재 공장군을 기본으로 한 건재공업기지를 세울 예정입니다.

우암지구는 자연호수, 해안경관과 야산을 이용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홍의지구는 야채와 우유, 육류 등을 서비스, 공급하는 기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1차 계획으로는 나진지구를 30만명 규모의 도시로 확충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나진시내의 안주지구를 5만명 규모의 도시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증가에 동반하여 선봉, 웅상지구의 방향으로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립되어 확장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 보충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공업용수, 생활용수는 우선은 현재 후창리에 있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이어 사용하고 공업의 규모 및 인구증가와 맞추어 제1단계로는 현존하는 후창리천의 치수댐을 증설하여 그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청천에 댐을 건설하여 그 물을 끌어들이어 하루 20만 m^3 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2단계로는 셋별군 용신리 그리고

회령군 창대리에 댐을 건설하여 선봉지구와 응산지구에 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나진지구에도 공급하여 부족한 용수의 일부를 보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수력발전소의 건설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전력은 우선은 현존하는 전력용량에서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선봉화력발전소를 40만Kwh로 증강할 계획이고 아울러 30만Kwh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증설하여 이 지구에서 합계 7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난방용수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전망을 갖고 5월 초순에 있었던 평양 국제회의 이후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국토건설 총계획과 동시 총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산과 중요한 프로젝트의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의 조건으로서 자본, 토지, 노동력과 더불어 기술, 시장의 제요소가 필요한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어서 이들 요소의 평가에 대해서 또 중국 심천의 경험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천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천의 공업지대는 2,700ha 정도이지만 우리의 지역은 2,000ha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조건을 고려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건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지역의 노동력은 40만 내지 50만명 정도라고 공표하였지만 우리의 계산으로는 45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중·러시아 3국의 협력사업이라는 조건 하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항만의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의미 및 개발에 관한 3국 간의 의견교환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중·러시아 3국 간의 개발계획에 대한 조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UNDP에서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초에 평양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회의가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토의가 깊어짐에 따라 향후 법률의 제정·정비를 통해 이 지역의 개발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3)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자유」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어느정도 연구를 하고 있고 국제토론회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면적은 621Km²입니다. 이 영역 안에는 어느나라의 투자가이건, 개인이건 또 어떤 제도의 나라이건 합영, 합작, 독자사업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법률은 올 하반기에 제정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정무원의 결정이 나온 후 특히 국제회의 이후에 많은 나라의 투자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지대에 진출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일정한 계획을 갖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법률이 제정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를 밟아서 투자하면 될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의 관세는 극히 낮은 수준이고, 노동력의 조달도 충분하여 그들의 기술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의 시기 설정과 자금조달에 대하여 말해주기 바랍니다.

◎ 지난 5월에 있었던 평양 국제회의에서 이 지대의 본격적인 건설은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나라의 국가계획에 추가되어 추진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이 지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대에의 투자는 본 대표단의 멤버들도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2년 7월 16일(목) 오전 인민문화궁전

4. 재정·금융·세무 등의 문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오기철

우리 나라에서 재정은 주체사상의 요구에 입각하여, 우리 나라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재정적으로 보증해 가는 실로 참다운 국민의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재정의 주요한 원천은 국가예산 수입입니다. 국가예산 수입은 국가예산에 근거하여 국가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입니다. 국가예산 수입에는 국영기업소의 거래 수입금, 국가기업 이익금, 협동단체 이익금, 서비스 수입금을 비롯한 각종의 원천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국가예산 수입의 기본원천은 국영기업소의 거래 수입금과 국가기업 이익금입니다. 국가거래 수입금이란 국가기관·기업소에서 생산된 체제품과 일부 생산수단의 가격, 서비스 요금,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순소득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납부하는 자금입니다. 국가기업 이익금이란 국가기관, 기업소에서 형성된 회사 순소득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납부하는 자금입니다. 협동단체 이익금이란 생산 수단, 편의 서비스의 분야에서 협동단체·협동조합에 의해 얻어진 회사 순소득의 일부를 국가와 협동단체의 금후의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으로서 납부하는 자금입니다. 외국과 약간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은 고정자산 원가상각금입니다. 이는 고정자산을 보수하여 수명을 연장한 가운데,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을 세워 적립하기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자금입니다. 재정수입 원천은 대체로 이상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재정면에 있어서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받아서 국가의 경제건설에 이용한다는 것은 최근에 이르러 처음 실시되는 조치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해방 후부터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외국과의 경제기술적 협력을 원할히 추진하여, 조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이번 나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현실의 요구에 입각하여 동북아시아 제국의 발전을 촉구하고 국가의 경제에 있어 장족의 발전을 달성시키기 위해 취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으로는 여러가지 장려조치를 취하여, 외국의 투자가가 기대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투자하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장려조치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해설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지대에 대한 세금정책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요점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에 따라서 그 해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새로운 세대 중에는 세금이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수단은 전국민의 소유로 되어 있어, 그곳에서 만들어낸 물질적 부(富) 자체가 전인민의 이익을 위해 분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게 되어 세금을 받는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국민은 주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전기 등을 사용할 때 일부 정해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세금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을 운영하여 이윤을 얻으려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그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은 합영, 합작, 독자기업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윤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혹은 우리 국민이 공짜로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세금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외국투자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병회사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합병기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소가 우리 나라 영역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용한 것과 얻어진 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것에 상당하는 세금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과하려하고 있는 세금에는 해당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관세, 소득세, 영업세, 사용세, 자산세 등의 세금과 사용요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들은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면에서 일정한 장려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984년에 채택한 합병기업소득세법은 문자 그대로 이들 합병기업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의 현실적 발전요구에 입각하여 합병기업 뿐만 아니라 합작과 독자기업도 설립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입각하여 소득세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합병기업소득세법에는 소득세를 25%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특별히 지정한 지대, 예컨대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기타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에서 20%까지 인하하여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소득이 얻어진 때부터 2년 간은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약 3년 간은 반으로 인하하여 지불하도록 하고,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익금·순소득을 우리 나라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하는 업종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 의해 얻은 합법적인 이윤과 정당한 수입 기타 기업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재산권, 노하우, 로열티 등의 권리를 북한에 팔아서 얻은 수입 또 기업이 생산을 하여 얻은 자금은 외국으로의 송금이 가능하고 이것을 송금할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소득세를 1

년에 몇 회를 나누어서 납부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1년에 1회 계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우대조치를 강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정재산관리규정을 비롯하여 감가상각에 관한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내용년수, 상각율 등이 정해져 있지만 시간관계로 전부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요점만 설명하겠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율법입니다. 즉 고정재산관리규정에 따른 감가상각금은 법정재산 형태별로 최초의 가치를 감가상각금율표의 비율로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우리 나라의 외화제도와 외환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외국환은 우리 나라 제도의 본질적 요구와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해서 외화수입을 장악하고 그 지출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화관리법에 기초하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면 개인은 친척과 친지로부터 받은 외화 증여금, 생활 보장금, 상속 등으로 얻은 증여외화를 자신의 소비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로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저금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외화를 사용하는 방법은 교환가능한 경화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환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외국의 대사관, 영사관을 가리킴)과 그 파견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무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이것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 즉 합영, 합작, 독자기업은 우리 나라의 외화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은행과 사전에 타협하여 해당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업은 경영활동의 필요에 의해 외국의 은행에 구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관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든 거래에 있

어서 우리 나라의 해당 법규와 규정에 근거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법규와 규정이라는 것은 상업유통 부문, 재정, 금융, 기타 거래에 필요한 부문에 관한 것을 가리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측 당사자와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서 얻어진 합법적 소득에서 소득에 상당하는 세금을 지불한 후 남은 돈은 제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술하였듯이 이들을 송금할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기관과 대외경제무역기관입니다. 그리고 합영기업에 대한 출자 혹은 용자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합영은행, 기타은행, 합영금융회사이고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개설된 경우에는 이것도 이들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자의 종류와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조건에서는 단기 및 중기 대부가 있습니다. 이것에는 고정재산 대부, 유통자금 대부 등이 있고 외화를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할 때의 이자율은 외화대부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대부이자율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책정할 계획입니다. 조선 “원”에 의한 대부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발표한 이자율을 근거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은행이 개설될 것도 고려에 넣고 있지만 그때의 이들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외국은행과 주재사무소 등이 없었으므로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된 법규나 규정이 없습니다. 향후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은행이 설립되면 그것에 적합한 법규를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우 외국은행의 영업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완전한 업무집행에 관한 권리부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면서 제한된 업무범위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국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그 이용이

보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한 자금을 의한 이익금을 지장없이 송금할 수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장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안전보장 문제 즉 외국인 투자기업이 설치되었을 때 그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증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어디까지나 외국인으로서 보호되고 신뢰받는 국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보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언어의 장애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해당지역에 일정한 외국어대학을 졸업한 학생, 인원을 배치하여 언어의 장애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제도상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운영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때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규에는 집회, 결사, 데모의 자유를 보증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업운영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이해심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1992년 7월 15일(수) 오후 인민문화궁전

(참고) 강사인 오기철씨는 조선무역은행의 부국장이다.

5. 외화제도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김준철

우리나라의 외화제도에 대해서 다음 4개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1) 외화관리제도에 대하여
- (2) 외화제도에 대하여
- (3) 외화의 예금·저금, 대부에 대하여
- (4) 외화의 반입·반출에 대하여

(1) 외화관리제도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외화관리는 본질적으로 외화의 통일적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외화의 수입과 지출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여 외화가 국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외화관리는 그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국민경제 부문에 대한 외화관리의 문제입니다. 인민경제 부문의 외화관리 문제는 국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외화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입니다. 국민경제 부문의 외화는 국가 무역기관과 비무역기관이 국가계획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고 국가의 승인하에 외화를 지출합니다. 국민경제 부문의 무역기관과 비무역기관에서 획득한 외화를 우리 나라의 무역은행에 집중시켜 국가의 승인하에 무역은행을 통하여 지출합니다.

다음으로 획득하는 부문에 대한 외화관리는 국가 경제계획의 테두리에서 기

관, 기업소가 획득한 외화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의미합니다.

국가 경제계획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외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기지를 세우고 수출원천을 동원하여 보다 많은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 지출합니다. 외화를 획득하는 기관에서는 그 소속과 특성에 따라서 외화취급은행인 무역은행 및 대성은행, 창광신용은행에 획득한 외화를 집중시켜 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 외화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외화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영·합작기업소, 외국인 독자기업소 및 외국 기관, 외국인의 외화는 그들 자신의 소유입니다. 바꿔말하면 합영·합작 기업소, 외국인 독자기업소 및 외국 기관, 외국인의 외화는 그들 자신의 소유물이고 이 외화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서 보호합니다.

그 가운데 외국 기관과 외국인 및 합영 기업소는 무역은행에 구좌를 두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외화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제일조선상공인이 설립한 합영회사는 조선합영은행에 구좌를 두고 합영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외화의 수입과 지출을 이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외국인 독자기업소의 설립이 가능한데 이들도 국가가 외화관리기관에 지정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외화관리제도는 국가마다 독자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현황은 이상과 같습니다.

(2) 외화제도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는 복수의 외화취급은행이 있습니다. 이 외화취급은행은 제도상 무역은행이 제정한 규정, 절차에 따라서 해당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나라의

외화취급은행으로는 무역은행, 대성은행, 창광신용은행, 조선합영은행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 공포된 조선산업은행과 조선통일발전은행이 있습니다. 이 양 은행은 현재 업무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화취급은행은 자신이 담당할 외화의 수입과 지출을 독자적으로 관리하지만 외화업무제도에 관련된 업무는 무역은행이 제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수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영역 내에서는 외화의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인민은 획득한 외화를 지정된 은행에 예탁하고 우리 나라의 통화를 수취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국 기관과 외국인, 합영·합작기업소, 외국인 독자기업소는 해당 거래은행에 외화구좌와 우리 나라의 “원”구좌를 개설하여 외국과의 거래에 대한 외화수입과 외화지출에 대해서는 지정된 외화구좌를 통해서 하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현금지출은 내화의 원구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합영·합작 기업소 및 외국인 기업소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역회사를 통해서 외화로 행합니다. 내화의 원구좌의 자금원천은 어디까지나 내화입니다. 외화구좌의 잔고는 내화의 원구좌로 옮길 수 있지만 내화구좌의 잔고는 외화구좌로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상호간의 거래는 무현금으로 하고 현금으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수입상품의 구매와 판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역회사를 통하여 외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관, 기업소 간의 거래는 무현금 거래를 장려하고 현금거래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의 외화거래는 통일적 관리하에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화의 교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외화교환은 무역은행과 위임된 외화취급은행과 외화교환소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외화교환 또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용하는 외화는 미국달러, 영국파운드, 독일마르크, 일본엔, 스위스프랑, 프랑

스프랑, 홍콩달러, 오스트리아실링, 싱가포르달러,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네덜란드길더, 스웨덴크로네, 벨기에프랑입니다. 이들은 무현금 결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외화교환율은 무역은행이 제정하고 그 교환율에 근거하여 외화의 교환이 행해집니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모든 외화교환소에서는 무역은행이 정한 교환율을 유일한 교환율로 하여 외화교환이 행해집니다. 외국과는 달리 일반 외화취급은행과 외화교환소에는 각각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교환율을 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외화교환은 통일적으로 지정된 교환율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외화를 교환할 때에는 외국과 달리 태환권을 이용합니다. 이 태환권은 유가증권이면서도 현금과 같은 방법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서는 불편이 없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태환권은 다시 외화와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귀국할 때에 사용하고 남은 태환권을 자신의 나라에 송금하기를 희망하면 송금시킬 수 있습니다. 외화교환소에서는 외화현금뿐만 아니라 여행자수표, 송금소액환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수표와 송금소액환은 같은 액의 태환권으로 바꿀 수 있고 희망하면 외화현금으로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송금소액환, 여행자수표는 물론이고 교환할 때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0.75%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마스타카드와 VISA카드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은행과 해당 서비스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인 여행자의 우리 나라 방문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일본에 JCB카드의 접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외화의 예금·저금, 대부에 대하여

외화의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에 따라서 업무분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

한 인민과 외국인 기관, 외국인은 무역은행에 구좌를 두고 외화의 예금 또는 저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의 종류, 액수에는 제한이 없고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예금·저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수취할 수 있고 예금한 외화는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태환권으로 수취하는 것도 가능하고 외국에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예금·저금은 어디까지나 외국인, 합영·합작기업소, 외국인 독자기업소의 소유이고 이것을 국가가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저금에 대하여 외국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비밀을 철저히 보증함과 동시에 예금·저금업무에 있어서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외화의 대부는 거래은행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래은행을 통하여 경영활동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외화를 단기대부의 형태로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차입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외화의 대부에 관해서 은행에서 외화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그 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는 합영·합작기업소, 외국인 독자기업소에 주어집니다. 또 외화의 대부에 관해서는 일정한 통제·감독기관이 있습니다. 약정한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이 기관이 이것에 대해 통제·감독하고 통지서를 보내 대부금을 회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4) 외화의 반출·반입에 대하여

이것에 관한 제도는 타국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화폐는 교환성 화폐는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화폐현금, 태환권, 우리 나라의 돈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은 외국으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화폐, 태환권은 우리 나라 영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의 경화와 외화소액환의 반입은 금액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세관의 수속에 따라서 등록조치를

하면 자유로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외화를 반출할 경우는 국내 인민과 외국인을 약간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민은 은행에서 발행한 외화교환증명서가 없으면 외화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정당한 수속으로 가지고 들어온 외화의 범위 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반출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귀금속류에 대해서는 해당 통제기관이 발행한 서류와 세관의 반출허가가 없으면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상은 외화현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외에 은행을 통하여 또는 은행구좌를 통하여 외국과의 거래계약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반출은 해당 대외결제서류에 따라서 이들 기업소의 외화예금구좌 잔고의 범위 내에서라면 자유로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외화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는 통제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그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외화관리제도는 다른 나라와 거의 같지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수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이상과 같습니다.

1992년 7월 15일(수) 오후 인민문화궁전

(참고) 강사인 김준철씨는 조선무역은행의 부총재이다.

6. 통신부문의 현황과 전망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김래현

북한의 통신조직과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신부는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고, 통신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통신전화국, 국제통신국, 위성통신국이 있고, 각 도에는 체신관리국, 각 시·군에는 체신서 그 밑에는 체신분서를 두고, 국가적인 지휘통신과 주민의 통신에 대한 수요를 보증하기 위해 통신을 조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화기 보유대수는 1,089,300여대이며 도시별 자동화의 비중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전화 자동교환기의 종류는, 전자식 자동교환기, 크로스바교환기, 스택 바이 스택 교환기 등이 있습니다. 시외회선에 있어서는 하다가회선, 마이크로파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신회선으로는 마이크로파회선, 위성통신을 통하여 외국과의 통신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통신분야에 있어서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우선적으로 전화분야에서 중앙과 도·시·군·리에 이르기까지 전화의 자동화를 실현하려고 고려중입니다. 이 계획의 실시는 2단계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평양시의 자동교환능력을 30만회선 정도

각 도에는 평균 3만회선 정도

각 시·군에는 평균 2000회선 정도

전체적으로 100만회선 정도의 설치를 예정

제2단계

- 평양시의 자동교환능력을 70만회선 정도
- 각 도에는 평균 5만회선 정도
- 각 시·군에는 평균 3000회선 정도
- 각 리에는 평균 200회선 정도
- 공장·기업소에는 평균 200회선 정도
- 전체적으로 300만회선 정도의 설치를 예정

장래의 ISDN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자교환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외회선으로서는 이것에 적합한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구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마이크로파 회선의 구성에 있어서도 역시 2단계의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증대하는 각종 통신수요와 TV중계를 보충하기 위한 통신설비의 보강을 예정하고 다음 단계는 국내의 TV중계와 전화통신의 설비를 더욱더 신설하여 마이크로파 회선망의 증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신은 현존의 위성통신 회선과 마이크로파 회선에 설비를 보충하여 첫 단계는 현행 능력의 3배 정도로 늘리고 다음 단계에 이들을 5배 정도 확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신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면 인텔세트체계에 있어서 FDM 36회선, SCPC 18회선, 스포트니크체계에 있어서 FDM 22회선, SCPC 18회선, 마이크로파 회선능력 24회선, 테이블·네트워크는 15회선 등이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신 현황과 전망의 개략을 설명하면 이상과 같습니다.

1992년 7월 15일(수) 오전 인민문화궁전

7. 항만의 현황과 건설계획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마수창

우리 나라의 주요 항만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 나라의 북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나진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진항의 통과능력은 연간 300만톤, 부두의 길이는 2,115m, 바스는 1만톤급 8척, 5천톤급 5척입니다. 총부지 면적은 38만Km², 화물보관면적은 20만 3,000m², 철도 지선의 길이는 16Km입니다. 화물의 증대에 동반하여 나진항의 통과능력을 3,000만톤(연간)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에는 현존의 부두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취급가능한 로딩설비, 그것에 관련된 후방설비, 보관설비를 확충하여 연간 1,000만톤의 화물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제2단계에는 화물의 증대와 더불어 약 4,000m의 새로운 부두를 건설하여 1,200만톤의 광석, 석탄 등의 벌크 화물과 800만톤의 컨테이너 화물 등 합계 2,000만톤(연간)의 화물을 새로이 취급하도록 하는 확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이 나진항의 전망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진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청진항은 우리 나라의 북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향과 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진항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단 위	합 계	서 향	동 향
통과능력 / 연 간	만톤	800	713	87
부 두 의 길 이	m	2,380	1,626	754
바 스	1만톤급	8척	6척	2척
	5천톤급	5척	2척	3척

총면적은 100만Km², 화물보관면적은 12만 6,000m², 철도지선의 길이는 21.6Km입니다. 청진항은 장래, 이것을 확장하여 통과능력을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에는 서항과 현재 있는 3호와 4호의 양쪽 부두를 연결하여 콘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535m의 새로운 부두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부두는 100만톤(연간)의 콘테이너를 취급하는 한편, 현존설비에 대하여도 근대적인 신설비도 변경하여, 청진 서항·동항에서 1,000만톤(연간)의 화물을 취급하도록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에는 청진 동항에 2,400여m의 새로운 부두를 건설하여 새로이 1,000만톤(연간)의 화물을 취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에 위치한 남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포항의 현재 연간 통과능력은 750만톤, 부두의 길이는 1,319m, 바스는 2만톤급 8척, 1만톤급 1척입니다. 현재 남포항에는 서해갑문이 건설됨에 따라서 5만톤급의 화물도 취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부지면적은 45만Km², 화물보관면적은 8만 5,000m², 철도 지선의 길이는 19Km입니다. 남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3,000만톤(연간)의 화물을 취급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1단계에는 현존의 항만설비능력을 높여 근대적인 설비로 확충하고 그 관리운영을 컴퓨터화하여 연간 통과능력을 1,000만톤까지 늘리는 한편, 콘테이너 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부두를 1년 내지 2년이내로 건설하여 연간 100만톤의 콘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화물의 증대에 동반하여 새로운 부두를 더욱더 건설하여, 연간 3,000만톤의 각종 화물을 취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에는 남포항 이외에 해주항과 송림항이 있습니다. 해주항의 현재 연간 통과능력은 150만톤, 부두의 길이는 410m, 바스는 1만톤급 3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습니다. 총부지면적은 48만Km², 화물보관면적은 3만 2,000m²입니다. 해주항의 전망은 시멘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항만으로서 확장하고, 연간 200만톤의 시멘트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송림항의 현재의 통과능력은 연간 250만톤, 부두길이는 445m, 바스는 2만 톤급 3척을 동시에 접안시킬 수 있습니다. 송림항은 대동강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해갑문이 건설된 결과, 5만톤급의 선박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림항의 전망은 연간 600만톤까지 통과능력을 늘려, 시멘트, 비료, 석탄을 비롯한 각종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992년 7월 16일(목) 오전 인민문화궁전

(참고) 강사인 마수창씨는 해운부 항만총국 계획심사처 부처장이다.

8. 철도의 현황과 전망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강치정

우선, 우리 나라의 철도운송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해방 전까지 우리 나라의 철도는 서부지구 및 동부지구에서 각각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장하는 경의선(경성~신의주)과 원라선(원산~나진)을 간선으로 하고, 그곳에서부터 지선이 나뉘어진 상태이며, 동서 간을 연결하는 철도는 평원선(평양~고원) 1개이었습니다. 또 산악이 많은 지대이므로, 지선의 경우 선로의 최대 경사도가 33%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방 후 김일성은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철도 실정에 입각하여 통과능력과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의 전기화를 실현하는 한편, 동서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여, 발전하는 국민경제의 수송사정을 원활히 하도록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철도운수부문 건설관계자는 김일성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신안주와 개천 간의 철도를 협궤에서 광궤로 변환하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구성~팔원~덕천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해주~하송 간의 협궤도 광궤로 변환했습니다. 이어서 중부지대의 동서부를 연결하는 평산~세포 간의 철도를 1972년에 완공하였으며 북부지대의 동서부를 연결하는 만포~혜산 간의 철도는 1988년에 완공하여 필요한 지선도 건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현재 철도의 총연장은 8,960Km입니다. 철도 전기화 공사는 철도 경사가 심한 구간부터 우선 전기화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서, 1948년에 평원선의 양덕~천성 간의 철도를 전기화하고 이어서 1949년에 만포선의 피고~고인 간을 전기화했습니다. 이들의 전기화부터 시작하여 이미 평양~청진~두만강역 간, 평양~신의주 간, 평양~사리원 간,

평양~남포 간, 평산~고원 간 등, 기본 간선의 전기화 공사를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 수송량이 많은 지선도 전기화가 추진되어 전기기관차에 의한 운행 비중은 90.1%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기관차에 의한 일원화 수송시스템이 확립되어 우리 나라는 철도의 전기화에서 세계에서 발달한 국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역화물 수송에 편리하도록 중국과는 신의주, 만포, 남양의 3개소를 연결하고 러시아와는 두만강역과 러시아의 핫산역이 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무역화물이 우리 나라의 항을 경유하여 철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각지에 수송되는 한편,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방의 무역화물이 우리 나라의 철도와 항을 경유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국에 수송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는 증기기관차와 30만톤급의 화차 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대소의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기관차 공장과 60톤, 100톤급의 중량화차를 생산할 수 있는 차량생산기지가 건설되어 국내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외국에서의 수요에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도운수 부문에 필요한 숙련공과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철도총국에 기술자양성소와 초급, 중급 기술원학교를 갖고 있는 외에도 5개소의 철도전문학교와 3개소의 단과대학 및 철도대학이 있어 매년 수천명의 기술숙련공과 기술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운수의 전망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국민경제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수송수요는 한층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입각하여 나라의 수송동맥이며 국민경제의 선도자인 철도수송 부문을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빨리 발전시켜 단기간에 화물수송량을 대

Ⅲ. 평양시 주변의 주요 공장·시설 개요

일조무역회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일본경제교류 대표단의 파견에 임하여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북한의 광공업 공장·시설의 시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동위원회는 평양시 주변의 광공업, 통신, 항만, 농업관계의 공장을 소개했다. 대표단이 각각 방문처의 책임자로부터 현황, 과제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는데 아래에 그 개요를 소개한다.

1. 주요 공장·시설

(1) 국제통신센터

방문일자 : 1992년 7월 15일

국제통신센터는 지상 14층, 지하 1층의 메인빌딩과 2층 건물의 부속빌딩이 있다. 이들의 총면적은 1만 2,940m², 메인빌딩의 높이는 약 80m이다. 1989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본센터·메인빌딩 각 층의 시설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층 : 각 기관이 사용한 국제통신요금의 계산센터, 국제통신용 사서함, 국제우편국 등

2층 : 국제통신, 텔렉스, 팩스의 수·발신 부문

3층 : 기계실, 시설재(케이블 등)의 격납실

4층 : 국제통신용 자동교환기(프랑스제 4만회선) 1989년에 설치, 지금까지 트러블은 없음

5층 : 국제통신용 자동교환기(북한제 1만 5,000회선)

6층 : 위성통신국과 직결된 다중통신설비, 전신용, 텔렉스용 기기를 설치

7층 : 반자동 중계 자동교환기(독일제와 프랑스제 32회선)

8층 : 통신장치 작동실

9층 : 텔렉스 반자동 교환기

프랑스 알테크사와 기술 라이선스(512회선)에 의한 것과 독일 지멘스사(1979년제)의 장치가 있다.

전체의 배치는 10층까지는 국제통신용의 장치, 관련기재, 작동실, 11층이상은 국내통신용의 장치, 관련기재 및 내빈용 응접실 등이 있다. 평양시내에는 본국제통신센타에 직결되어 있는 통신시설이 9개소 있다.

(2) 남포항

남포항은 해방 전엔 선착장이 두 개 소이었고, 항만하역 기계설비는 전혀 없었으며, 3,000톤급의 선박은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해방후 숙련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항만건설에 몰두하여 무역업무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50년대에 들어와 6·25전쟁때 남포항도 커다란 피해를 받아 그때까지 계속되어온 건설사업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6·25전쟁 후 자력갱생의 방침에 근거하여 남포항의 건설이 개시되어 50년대말에는 복구가 끝나고 60년대부터는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 후 2단계의 확장공사계획이 추진되어 1978년에는 그 공사도 완료했다. 그 결과 각종 크레인, 벨트콘베어 등의 항만하역 기계설비도 정비되어 현재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현재의 남포항의 처리능력은 754만톤에 달하고 있지만 김일성과 김정

세레니움, 파라디움, 유황, 인산비료 등으로 제품의 종류는 240종류에 달하고 있다. 또 규격품은 4,000개에 미치고 있다. 원료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의 연간 생산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구 분	연간 생산량
동	3만톤(품위는 99.97%)
아연	4.7만톤~5만톤
비철압연	3만톤
유산	10만톤
인산비료	3,000톤

공장의 부지면적은 109만m², 건축면적은 24만m²이다. 종업원은 5,000명, 연합기업소에는 야간 공업대학이 있어 기능공의 육성에 힘쓰고 있다. 본공장은 남포항에 인접하고 있지만 공장부지 내에는 전용 부두는 없다.

(5)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방문일자 : 1992년 7월 18일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는 광산, 시멘트공장, 내화벽돌공장, 동력공장의 4개의 공장과 광업시설로 되어 있다.

이중에 시멘트공장은 부지가 28만m², 건물은 12만m²이며 종업원은 약 2,000명, 우리 기술진은 1,500명, 또 여성 종업원은 400명이다. 1986년 3월에 착공하여 88년 6월에 완공했다. 이 시멘트공장은 북한에서도 비교적 상위에 속하는 우수한 공장이다. 시멘트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200만톤이며 종업원 1인

당 연생산량은 2,200만톤이다. 설비된 생산공정은 모두 자동화하고 있다. 공장의 특징은 제진장치의 완비이며 제진율은 90% 이상이다. 북한에는 법률로 공장의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일정한 주기로 감독기관에 의한 검사가 있으며, 그때에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연합기업소 내의 광산에서 생산된 것이 쓰여진다. 이 광산에는 기업소의 기초와 원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150년분의 매장량이 있다고 한다. 연료는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내화물은 연합기업소 내의 내화벽돌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 각종 보수공사는 자력으로 하고 있다. 부산물로서 칼슘비료(연간 100만톤)를 산출하고 있다. 당공장은 생산공정이 집약되어 있고 그 전의 공장에 비하여 6분의 1의 면적으로 효율화가 도모되고 있다. 공장에 장비되어 있는 설비는 북한의 기술자가 설계한 것이지만 기계 그 자체는 외국(독일 시멘스사제가 많다.)에서 수입하고 있다. 공장 내의 3개의 건물과 설비는 자력으로 건조, 제조한 것이다. 상원시멘트공장에는 김일성이 3회나 방문하여 10회에 걸쳐서 교시를 하고 있다.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전국적으로 6,600만톤, 유력공장에서는 연간 300만톤과 200만톤을 생산하는 공장이 수개소 있다. 현재 주택건설이 정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시멘트 수요는 지극히 크고, 상대적으로 수출방면의 할당분이 감소하고 있다.

(6)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방문일자 : 1992년 7월 19일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의 시멘트공장은 1974년에 생산을 개시했다. 이미 17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공장의 하나이다. 시멘트공장의 부지는 80만m², 건물면적은 27만m²이다. 현재 있는 시설은 소결로는 3기, 각 100만톤 규모로 공장의 총생산능력은 연간 300만톤이다. 연합기업소 내에는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한 야간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외에 부업으로서 버섯 재배를 지도하는 학교도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병원, 유치원, 초대소 등의 시설도 있다. 제품의 80%는 수출을 하며, 수출되는 지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다. 남은 20%는 국내에 건설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평양시내의 건축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는 당공장의 제품이다. 김일성은 당공장에 두 번이나 방문하여 6회에 걸친 교시는 통해서 당공장의 발전에 중요한 지침을 주었다. 당공장의 기술수준은 높고 공장에 소속하는 기술자는 500명을 헤아리고 있다. 현재 공장의 현대화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이것을 목표로 하여 전망계획을 예의 입안중이다. 당공장은 입지조건이 좋아서 원료위에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는 연합기업소 내의 광산에서 3,000m의 콘베어 벨트로 운반되어 온다. 무연탄의 반송도 콘베어 벨트로 운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7) 2·8 직동탄광

방문일자 : 1992년 7월 19일

본탄광의 정식명칭은 석탄광업부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2·8직동탄광이다.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는 평안북도의 북부탄광지대에 위치하지만 연합기업소 내에는 몇 개의 탄광이 있다. 김일성은 몇 차례나 본탄광을 방문하여 현지지도를 하고 있어서 2·8직동탄광은 영광으로 가득찬 탄광이다. 무연탄은

공업원료로서도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본탄광은 북한경제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8직동탄광의 현재 연간 생산량은 270만톤이다. 이전에 일본 대표단이 이 탄광을 방문하였을 때 연간 생산 100~110만톤이라고 소개한 일이 있지만 당시에 비하여 대폭적인 발전을 달성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연생산 500만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예의 노력중이다. 본탄광의 추정 매장량은 3억 4천만톤이다. 탄질은 6,100~6,300칼로리, 성분은 탄소 78%, 수분 13%, 휘발분 6%, 유황 0.25%이다. 탄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야금공업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건재공업부 관계분야에서 시멘트 생산용으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화학공업 원료, 화력발전소용으로도 공급되고 있다. 본탄광의 석탄은 연질이며, 굴삭 방법은 경사지게 파들어가는 것과 수평으로 파들어가는 것의 두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다. 물론 굴삭의 기계화를 꾀하고 있지만 연질탄인 점에 유의하여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세탄시설은 분상(粉狀)이 된 상태를 고려한 시설로 되어 있다. 석탄의 반송은 이전에는 전차로 하였지만 수년 전부터 콘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 나서 생산능력이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콘베이어벨트의 벨트폭은 1,200mm, 연장은 5,000m, 총연장은 1만m에 달한다. 콘베이어벨트의 반송능력은 시간당 500톤이다. 갱도의 최대폭은 13m, 평균 6~7m, 완만한 경사로 하강하고 있다. 전차갱도의 200m의 위치에 탄층이 신장되어 있지만 이 전차 갱도는 더욱더 100m로 연장할 계획이다. 갱 내의 작업 분담으로서는 굴진, 채굴, 공급의 3가지 부문이다. 탄광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산업의 노동자 임금이 평균 290원인 것에 대하여 평균 600원으로 높다. 특히 굴진을 담당하는 노동자 중에는 1,200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노동자에게는 계획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초과달성한 자에 대해서는 상응한 할증임금이 지불된다. 연합기업소 내에는 기계공장, 부품공장, 기계수리공장 등도 있다.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외에 부업으로서 축산관계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8)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방문일자 : 1992년 7월 20일

본공장은 1945년 11월에 창업했다. 당초에는 모터, 트랜스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의 공장이었지만 현재는 북한 유수의 종합·대형공장이다. 제품은 발전 설비, 대형 터빈, 파이프류, 시멘트 기계, 화학 기계, 각종 모터, 트랜스 등이다. 특수 설비의 생산도 하고 있다. 이미 12만 5천kw의 수력발전 설비, 5kw의 화력발전 설비 등의 제조 실적이 있다. 북한은 산지가 많아서 수자원이 풍부하므로 산지부근에 소형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본공장은 이 방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종합·대형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주변에는 주물공장 등 전문공장군이 배치되어 있다. 본공장은 1975~78년시점에 서구 국가(특히 독일, 프랑스 등)로부터 대형 기계를 도입·장비했지만 국산 기계도 적정 배치하고 있다. 본공장은 이 분야의 대표적 공장이지만 생산에 있어서는 국내 수요의 확충을 첫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제까지 중동지역, 아프리카지역 방면에 발전설비 등을 수출한 실적이 있다. 금후에도 해외에서 수주를 받으면 특수 기계의 생산을 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 본공장이 생산하는 기계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연합기업소 내에 엔지니어링 설계를 하는 부문이 있어 600명의 요원이 이에 소속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연합기업소의 종업원 총수는 2만명, 그 중에 터빈공장이 1만명이고, 여자 종업원수는 전체의 35%이다. 대학졸업자 기술원은 연합기업소 전체에 2,000명이다. 임금에 대하여는 책임있

는 직책이 있는 자 및 기술자가 250원, 일반 노동자는 110원 정도이다.

(9) 모란봉피복합영회사

방문일자 : 1992년 7월 18일

모란봉피복합영회사는 모란봉주식회사(동경)와 북한의 은하무역총회사와의 합영회사이며 현재 조업중인 합영회사로서는 최대규모의 회사이다. 1986년 12월에 제1공장(대동강구역, 87년 4월 조업개시), 제2공장(동대원구역)은 87년 2월에 계약, 88년 9월부터 조업을 개시했다. 모란봉피복합영회사의 출자금 총액은 27억엔, 모란봉측이 51.8%, 북한측이 48.2%이다. 출자 내용은 모란봉측이 JUKI의 스폰지 머신, 미싱, 다카오카의 연반기, 파라, 돌코프, 스트로벨 등의 특수 미싱, 기타 최신 피복가공 설비 및 원재료, 북한측이 공장 건설, 노동력, 토지 등이다.

제2공장은 5층 건물로 부인용 블라우스, 신사기성복, 블루진 등의 봉제를 하고 있다. 종업원은 양쪽공장을 합하여 여자 1,000명, 임금은 북한의 일반수준보다 높으며 우대받고 있다. 모란봉측이 몰두한 기획, 디자인, 옷감 등을 양질의 노동력에 의해 봉제, 가공하는 것으로 이미 부인용 블라우스 16만벌, 신사기성복 14만벌, 블루진 16만벌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일본방면의 수출도 순조로워서 작년 가을부터는 백화점에서도 팔리고 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전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큰 기업체, 수퍼에서 오리지날의 소재·디자인의 제공을 받아 봉제가 좋다고 가격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북한측도 이 사업을 평가하여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망은 밝다.

2. 농업 관계기관 · 시설

(1) 조선농업과학원 · 농업과학전시관

방문일자 : 1992년 7월 16일

조선농업과학원은 1948년에 창설되었다. 현재 14개소의 지원과 100개소의 시험장을 소유하고 있고, 야채를 제외한 보리, 옥수수, 감자, 콩류 등 곡물 및 누에의 품종개량과 재배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벼의 조생품종(태풍의 피해 회피), 내병성(도열병), 내한성, 다수확성(ha당 7~8톤을 10톤으로) 품종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 시기를 1995년으로 잡고 있다. 일본과는 벼, 비료, 농업 등에 대하여 문헌의 교류가 중심이지만, 각 방면의 교류관계가 있다. 중국농업과학원과는 밀접한 교류관계를 갖고 있다.

농업과학전시관은 1975년 1월 9일에 농업과학원의 시설로서 설립되었다. 전시관에는 벼, 보리, 콩류, 옥수수, 감자, 마늘, 버섯, 누에, 닭, 뽕나무 외에 포도, 사과, 배 등의 과실, 배추, 무우, 고추, 호박, 파 등의 주요 야채의 연구성과 및 업무내용을 각각 사진, 그림,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정연하고도 알기쉽게 전시하고 있다. 옥외 전시장에는 트랙터, 기타 농업기계가 전시되고 있다. 이들의 달성 성과는 김일성, 김정일의 적절한 교시·지도의 결과이다. 또 컴퓨터 제어에 의한 인공 기상실이 신설되었다. 이 장치는 오스트리아제이고 현재 벼의 내한성 품종을 육성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야채류의 증수목표는 1ha당 200~300톤이다.

(2) 평양야채과학연구소

방문일자 : 1992년 7월 16일

평양야채과학연구소는 1959년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창설되었다. 당초 대동강 상류 지점에 설치되었지만 수 년 전에 평양시 동쪽 12Km 지점에 있는 현채위치로 이전했다. 본연구소는 농업위원회에 소속한다. 15개의 연구실이 있고, 100명의 직원, 300명의 농부로 운영되고 있다. 부지 총면적은 15ha로 육종 및 채취 온실, 하우스가 있다. 전국에 두 개의 분소와 각지에 시험장을 갖고 있다. 주요한 업무는 이들 전국 각지의 야채 시험장 및 그 활동가와 연락을 취하면서 평양시 및 전국의 야채생산을 위한 기술연구와 지도를 하는 것이다. 연구활동은 응용·실용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며 기초연구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지(露地)재배와 시설재배 기술연구에 병행하여 배추, 무우, 양배추(나비의 애벌레 내충성 품종), 오이, 토마토(矮性無支柱 재배용), 가지, 고추(전염병 저항성), 파(내한성), 시금치, 고구마 등의 육종과 원종채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배추에 대해서는 1975년까지 김치용 11품종을 개발하여 최근에 맛좋은 것으로 50% 증량품종을 발표하고 있다. 육성된 품종은 국가(종자검사소)에 의해 3년 간의 검정을 거쳐 국가품종으로서 인정 등록후 원종채종을 한다. 본연구소의 지도하에 원종은 원종농장에서, 일반 종자는 채종농장에서 생산되고 농업위원회 종자관리소에 소속하는 국가, 도, 시, 군의 종자관리소를 통하여 전국 4,000개소의 협동농장으로 배포된다. 본연구소에는 하이테크 연구실도 있어서 조직배양과 유전자 바꿈, 연간 3모작 250~300톤/ha의 생산이 가능한 품종의 개발 등을 하고 있다. 본연구소는 전국 야채연구소협회에 소속함과 동

시에 해당분야의 연구논문에 대한 학위심사도 실시하고 있다. 대외활동으로서는 중국과의 교류관계가 가장 밀접한데 종합적인 기술교류와 함께 공동연구 등도 하고 있다. 기타의 국가에서는 불가리아, 폴란드,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등과 연구용 소재로서의 종자 교환, 세미나 개최, 과학자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와는 밀접하여 나리티야야체연구소와 각별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서구 국가에서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등지에서 과학자의 왕래가 있다. 기니아,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인재의 파견, 기술원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는 거의 교류가 없지만 ① 야채육종, 채취재배연구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 교류, ② 수탁채종 등의 관계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3) 조선중앙종자관리국

방문일자 : 1992년 7월 19일

조선중앙종자관리국은 농업위원회에 소속하고 야채, 곡물, 과수, 산림수목 종묘 40종, 400종의 생산·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의 도, 시, 군 구역에 하부조직을 갖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는 벼, 옥수수 등의 곡물 및 양배추 등 야채의 대부분은 전국각지에서 생산하여 200군, 400개소의 협동농장에 공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담배 등의 소량의 것은 국가와 도에서 통일관리를 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량은 협동농장에서 군, 도, 국가에로 요구량을 집약하고 있고 농업과학원 또는 야채과학연구소에서 필요한 원종을 생산하여 곡물의 20%, 야채의 40%를 이월하는 재고를 갖도록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월한 재고를 갖는다는 것은 김일성의 지도에 의한 것이다. 현재 특별한 종자 저

장고는 세워지지 않았다. 감자의 종자는 온돌 저장을 실시하고 있다. 농작물의 유통가격은 국가가격제정위원회에서 산출하여 정무원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다. 농산물의 수출은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전엔 사탕무우를 수입한 일이 있지만 현재 종묘는 자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이현리협동농장

방문일자 : 1992년 7월 18일

이현리협동농장은 평양시의 동쪽 20km, 해발 120m, 남강변에 있고, 평양시의 야채 공급기지이다. 농장 종사자는 1,200명, 총 경지면적은 960ha이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논 : 200ha

벼 ... 5/12 모판식재 120~130/m²

포기당 15개 가지를 갖는 1,800~2,000포기/m²

91년도 예상수확 9~10톤/ha 실수확 9.2톤/ha

밭 : 700ha

양잠 }
축산 } : 60ha

과수 } 과수...딸기, 사과, 살구, 복숭아, 자두, 포도

야채 : 450ha

노지...30종 2모작 수확목표 300톤/ha

품종별 경작면적(단위 : ha)은 이하와 같음

봄배추	70	가지	26
가을배추	240	썰레	12
양배추	230	마늘	12
무	120	수박	6
고추	50	생강	1.2
파	40	썩	—
토마토	32	홍당무	—

하우스...4모작 7ha

시금치, 배추, 오이 등

야채저장고를 설치, 출하조정을 위해 활용

자유지는 30평

트랙터 60대 보유

1956년 김일성의 지도에 따라 남강변에 양수관개시설의 건설에 착수, 완성 후 매 초마다 10톤, 매 시간마다 1.2만ha의 평양지구 광역관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안정증산에 기여하고 있다. 본협동농장의 연간 총수입은 800만원, 농장경비 공제 후의 잔금을 농장원에게 분배하여 1인당 2,500원이다. 이것은 도시 노동자보다 고수입이다. 그리고 1호 평균 2인이 취로하고 있고 본협동농장에는 농업 지식의 보급소, 학교, 병원 등 농장원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또 주택은 국가가 건축하여 무료로 농장원에게 대부되고 있고 그 외에 의료, 교육 등도 무료이다.

(5) 청산리협동농장

방문일자 : 1992년 7월 19일

청산리협동농장은 북한의 모델협동농장이고,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다. 1953년에 건설에 착수하여 57년에 전농민이 참가하여 완성했다. 그동안 김일성이 1946년부터 89년까지 90회에 걸쳐 농민을 지도하고 특히 1960년에는 15일간 머물면서 지도하고 있다. 김일성이 본협동농장을 지도한 사상과 방법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라고 불리워져 전국의 농업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본협동농장의 인구는 3,200명, 노동인구는 900명(그중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850명), 호수는 600여호이다. 경지면적은 1,200ha,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논 : 670ha

92년의 수확목표 9.2톤/ha

과수 : 160ha

양잠 : 100ha

야채 : 50ha

무우, 배추(옥수수외 적작), 토마토, 가지, 오이, 파, 고추

농업기계는 100ha당

트랙터 8.6대

과종기 및 이앙기 60대

수확기 수십대

각종 연속농기계 천여대

물론 스프링클러는 완비하고 있고, 기양 양수장이 이용되고 있다. 본협동농장의 총수입은 700만원, 1소대당 5,000~6,000원이다.

협동농장의 최고기관은 농장위원회이다. 협동농장은 반으로 나뉘어지고 반은 대개 15명으로 된 조로 나뉘어졌다. 조에 소속하는 2~3명의 평가위원에 의해 조원의 노동내용이 평가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분배 대상금이 각 조원에게 분배된다. 농민의 노동시간은 도시 노동자와 같이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협동농장에는 청산농업대학, 고등농업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유치원, 인민병원, 요양소, 농장상점, 문화회관, 고층 문화주택이 있다. 교육, 의료는 무료이다. 그리고 청산리 방법, 청산리 정신을 배울 목적으로 본협동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청산리혁명사적관, 청산리사적비, 민주선전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6) 용성온실협동농장

방문일자 : 1992년 7월 18일

용성온실협동농장은 김일성의 지도에 따라 겨울철에 평양시에 토마토, 고추, 쪽갓 등의 야채를 공급하는 기지로서 평양시 교외에 건설되었다. 1971년에 불가리아의 기술을 도입하였고 24ha의 연동온실을 보유하고 있다. 400만kcal의 보일러가 5대 있어서 자동 관수, 자동 온도조절을 하고 있다.

중유의 연간 소비량은 1.4~1.5톤이다. 농장수입은 연간 1ha당 30만~40만원이고, 총수입은 600~700만원이다. 농장원은 500명이고, 1인당 하루에 190원, 연간 2,300원이 된다. 본협동농장의 채산에 대해서는 연간 소비 중유량과 일접한 관계가 있다. 토마토의 품종은 불가리아에서 도입한 5호를 연속 자가

채종하여 사용하고 9월~6월까지 10단 수확, 수확목표는 110~150톤/ha이다.
본협동농장의 생산물은 이전 구소련에 수출된 실적이 있다.

Ⅳ. 일조무역회, 동아시아무역연구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의 「공동보도」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의 파견, 안내에 참여한 일·북 4개단체는 이 북한 방문이 양국 간의 경제협력·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극히 의미있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곳에서의 대표단의 활동을 정리하고 금후 교류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공동보도」라는 형태로 발표했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조선아시아무역연구회의 초청으로 동아시아무역연구회의 飯島敏夫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이 1992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일조무역회를 비롯한 무역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대기업 상사, 대기업 메이커, 은행 등 54명으로 구성되었다. 공항에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강정모위원장대리가 마중나왔고 그후 회담을 진행시켰다. 회담에서 쌍방은 양국경제관계개발을 위해 솔직하고도 가치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방문기간에 대표단은 김달현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환영회에 초대되었다.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은 만경대, 주체사상탑, 개선문, 남포항, 서해갑문, 지하철, 만경대창작사 등 문화기관과 대안중기계공장, 남포정련소, 평양화력발전소, 상원시멘트공장, 모란봉피복합영회사, 순천시멘트공장, 직통관광, 이현리협동농장, 청산리협동농장, 평양야채과학연구소 등을 견학하여 초대자측의 환대를 받았다. 대표단은 이 견학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건설과 국가의 강화발전을 위한 북한국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 대표단은 북한의 대일경제정책, 국민경제 발전전망, 나진·선봉지구의 상황과 전망 등에 대하여 해설을

청취했다. 쌍방은 이번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것을 인정하고 이번의 방문이 일본·북한 양국 국민과 경제계에 기여한 뜻있는 방문이었던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쌍방은 양국 무역 및 경제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교환도 했다. 대표단은 견학, 해설담화,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양국 간에는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북한 국교정상화회담을 전망하면서, 그 이전에라도 무역 및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것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쌍방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양 국민의 이익에도 합치하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에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를 없애고, 하루빨리 무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쌍방이 노력할 것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무역을 다각화하기 위해 가공무역, 보상무역, 합영·합작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쌍방은 금후 양국 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대형, 소형의 대표단을 각각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문별 기술자, 전문가 교류를 활발하게 실행할 것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이 북한방문을 통하여 서로에게 이해를 깊게하여 현실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를 금후 한층 확대·발전시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1992년 7월 21일

평 양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일조무역회를 대표하여
일본경제교류대표단
단장 飯島敏夫

서 명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를 대표하여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대리 강정모

서 명

V.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요청 항목

1. 북한의 합영투자유치 희망 대상 - UNIDO에 제출항목

북한은 1991년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와 협력하여 83건, 총액 15억 6,130만달러, 그중 57%에 상당하는 8억 8,700만달러를 외자의 도입에 의해 실시한다는 프로젝트안을 작성하여,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에 제출했다. 이 내용은 UNIDO의 자료로서 「동아일보」(1992. 11. 2)에 게재되었다.

이하 JETRO자료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다.

(금액단위 : 10만달러)

분 야	건	주 요 투 자 대 상	투 자 의 규 모	
			총투자액	해 외 유 치
광 업	5	동, 흑연, 대리석, 화장암 등	671	463
식 품	4	건강식품, 수산물 가공, 대두유, 과일과즙	329	171
의 류 직 물	7	견직물, 비단신발, 면이불, 나일론, 인조견사 등	2,939	2,172
목 재 가 공	1	합판	30	25
화 학 약 품	11	제유, 페타이트, 향수, 코크산, 에칠, 벤젠, 가성소다, PVC 등	2,766	1,399
요 업	7	유리섬유, 크리스탈, 점토, 고품토	556	304
및 소 자		규점토, 방암토 등		
금 속 산 업	12	아연, 카드뮴, 타다니움, 마그네슘, 크롬광, 전기동, 회토류 등	1,562	974
조 립 금 속	1	볼트, 너트	8	3
기 계 공 업	8	공작기계, 유압기, 연쇄기, 절삭기, 산업용미싱, 연료펌프, 분사기 등	1,921	952
전 기 전 자	25	بات데리, 흑백TV, 컬러TV, 전기모타, 변압기, 엘리베이터, 소형컴퓨터, 녹음기, 냉장고 등	3,342	1,651
조 선	2	어선건조, 각종 선박수리	1,489	756
합 계	83		15,613	8,870

(주) 일본해외무역진흥회,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1991년 12월)

2. 북한의 대일협력 요청항목

1991년 4월, 日朝무역회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수용에 따라서 「개발수입촉진선유단」을 파견했지만, 그때 조선봉화무역총회사와 조선화학제품수출입회사로부터 11개 항목의 대일협력·요청항목이 제시되었다. 1992년 7월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을 파견한 상기 단체에 대하여,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오현주 부위원장으로 부터 이 11개 항목에 관한 일본측의 대응이 요구되었다.

(1) 조선봉화무역총회사의 제안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영문명 : KOREA PONGHWA GENERAL CORPORATION

T L X : 36023 KNY KP, 5340 PONGHWA KP

T E L : 34304

F A X : 850-2-814444

당사는 6개부문으로 나누어 농산물, 목재, 피복, 시계, 일용품 등을 취급함과 동시에, 합영사업도 하고 있다. 당사의 특징은 중소규모의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가) 의류관계에서는 임가공을 하고 있어 네덜란드, 독일, 필란드 등과 상당한 실적이 있다. 일본과는 아직 실적이 없지만, 이 기회에 실현하고 싶다. 또한 5개의 공장을 갖고 있으며 유행, 스타일에 즉시 부응할 수

있다. 서구와의 경험이 있으므로 설비, 생산능력의 확대에 대하여 협력이 이루어 진다면 가능성은 크다. 서구에는 제품을 항공편으로 수송하고 있으므로 일본과는 비용면에서 충분히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목재가공에서는 북부지방에 소나무류가 많으므로, 제재하여 태국, 필란드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공설비와 건조기를 들여 올 수 있다면, 소련에서 목재의 상환을 받고 있으므로 가공하여 낼 수가 있다.

(다) 완구류는 목재완구를 이탈리아에 수출한 실적이 있다. 금후는 움직이는 완구를 만들 목표를 갖고 있다. 노동력은 있으므로 일본에서 기술과 설비의 제공을 받고싶다.

(라) 전기·일용품 등의 소형 전자제품 생산에서는 수작업에 의한 가공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일본에서 반제품을 제공받아, 북한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희망한다. 전자프린트기반의 가공도 생각하고 싶다.

(마) 유화철을 가공한 유산제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중에는 유가금속도 포함되어 있다. (1톤 중 금 1.1g, 은 5.8g, 동100g, 철 400~500kg) 이것을 분리하는 기술과 설비(처리능력 10만톤/연간)의 제공을 받고 싶다.

(바) 건강식품으로서 배추, 다시마 등의 가공도 희망한다.

(2) 조선화학제품수출입회사의 제안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영문명 : KOREA CHEMICALS EXPORT & IMPORT CORPORATION

T L X : 36020 HK KP

T E L : 32759

당사는 화학품상사와 삼정무역회사의 2개 회사로 되어있다. 화학품상사는 주로 수입을 하고 있고 원유, 오일, 타이어, 약품, 시약, 필름, 종이, 농약 등을 취급하고 있다. 수입액에서는 조선최대의 상사이다. 삼정무역회사는 최근에 조직된 회사로 수출기지의 조성과 기존공장을 풀가동시키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무역을 한다. 금후 일본과의 거래가 기대된다.

(가) 구조토의 濾過劑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과 최종설비의 제공을 받아서 제품을 일본, 아시아로 수출하고 싶다.

(나) 필름공업을 추진하고 싶다. 일본에서는 이미 중국과 실시하고 있지만, 북한에도 일정한 기술이 있으므로 협력을 희망한다.

(다) 세라믹공업부문에서는 원료는 무진장 있지만 기술은 뒤떨어진다. 위생도기 등 공장은 다수 있으므로 기술혁신을 하면 전망이 있다.

(라) 시멘트의 스투타일공업을 창설하고 싶다. 시멘트도 비닐론의 면도 있으므로 설비와 기술이 있다면 가능하다.

(마) 포장용기 공장에 대하여 협력을 얻고싶다. 북한에는 액체용 용기생산체계가 없으므로 특히 이것을 창설해가고 싶다.

3.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제기한 관심항목

1992년 3월 日朝무역대표단이 방북했을 때에,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이성록 위원장으로부터 이하와 같은 투자희망항목이 제기되었다. 그때 투자에 있어 필요한 일부 항목의 비용기준도 제시되었다. 이성록 위원장은 일본에게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1) 북한이 일본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주요한 부문

(가) 대륙붕의 원유 탐사, 채굴사업

우리나라의 대륙붕에는 중동지역에 비길만한 매장량이 있다고 한다. 최근 국제연합의 전문가들도 대륙붕에는 대량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기업이 이 매장원유의 개발을 한다면, 커다란 이익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금광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환영한다.

(다) 조선소의 현대화, 선박용 엔진 및 의장품 생산에 관한 협력

(라) 연생산능력 1000만m²의 유리공장의 건설

북한은 유리의 원료를 풍부하게 생산하며 유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마) 마그네시아크링카 제조공장 및 내화벽돌공장

북한의 마그네시아크링카는 천연의 것이고, 국제적으로 수요가 있다. 북한은 마그네시아크링카를 그대로 수출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료로 하여 각종의 내화벽돌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싶다.

(바) 10만추의 방적공장

(사) 견직물공장

(아) 연간생산 10만톤 능력의 아연정련공장

북한에는 대량의 아연매장량이 있지만 정련능력이 부족하다.

(자) 석탄의 가스화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 3만톤의 암모니아공장

(차) 반도체와 집적회로의 제조공장

(카) 시멘트공장의 건설

일본기업으로부터 150만톤규모, 300만톤규모의 시멘트공장 건설에 대하여 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2) 투자에 즈음하여 필요한 일부 항목의 비용기준

가. 인건비	200달러/월 (절대적인 것은 아님)
나. 동력비(전기료)	0.048달러/KWA
다. 공업용수	0.045달러/입방미터
라. 사회보험료	인건비의 7%
마. 감가상각비	운전설비(차량) 연률 20%
	기타 연률 15%
바. 건물임대료	연간 250달러/평방미터
사. 기업소득세	이익의 25%

Ⅵ.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1.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에 대하여

북한정무원은 91년 12월 28일의 결정 제74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국과의 경제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 우리 나라의 북부지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국가들을 비롯한 각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정무원은 나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함경북도의 나진, 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총면적은 621평방키로미터로 한다.
- (2)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은 북한관계기관의 승인하에 합작,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비롯한 합리적인 형태의 기업을 창설하여 운영할 수가 있고, 각종의 서어비스사업을 할 수가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나진, 선봉항과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 (3)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으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창설·운영 되는 기

업체의 투자 성격에 따라서, 관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각종의 특혜와 편의를 보장한다.

「조선중앙통신」(12월 20일) = 「조선통신」(1992. 1. 17)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참고사항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황과 전망계획」에 대하여는 본자료 앞에서 게재한 김보명씨의 해설이 상세하지만, 그곳에서 말하지 않은 약간의 사항에 대해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1)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용지구성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농 지	146km ²	24%
삼 립	353km ²	54%
수 면 부 분	84km ²	13%
공 업 지 역	19km ²	3%
거 주 구	13km ²	2%
기 타	6km ²	1%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건설에 있어서 유효지의 면적은 190km²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기상조건

연평균기온	6.3℃	
월도조건 : 1월 (최저)		-8.8℃
	8월	20.℃
연간강우량	770mm	
일 조 율	53%	
평 균 습 도	70%	
평 균 풍 속	3.3m/sec	

(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구역편성과 그 전망

(가) 나진지구—현재는 10개의 부두로 총연장은 2.5km이며 동시에 1만톤급 선박 13척이 통과가능하다. 장래 항만의 연간처리능력은 2,000~3,000만톤을 목표로 한다. 중계수송, 가공무역도시로서 의복, 편물, 식품, 일용품, 제화 등의 경공업공장군과 기계, 전자, 자동화기기의 공장군이 배치된다.

(나) 선봉지구—현재 연간 200만톤의 석유정제설비가 있다. 또 25만톤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다. 장래, 항만능력은 연간 5000만톤을 목표로 한다. 20만kwh의 발전소가 있다. 화학공업, 전자공업도시로서 원유정제 및 전자·자동화기기공장이 배치된다. 그리고 의복·편물·일용품 등의 경공업기지도 조성될 계획이다.

(다) 웅상지구—웅상항은 수입목재의 취급항으로서 특징이 있다. 항만도시로서 발전시킴과 동시에 건재공업·목재가공·포장재공장군을 기본으로 한 건재공업기지로 조성해갈 계획이다.

(라) 우암(서수라)지구-천연의 호수, 해안, 구릉 등 매력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관광도시로서 발전시킨다.

(마) 홍의리(두만강)지구-중국, 러시아와의 국경도시로서 야채, 우유 등의 서비스 공급센터 등이 배치된다.